

#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최 장 근(대구대학교 교수)

## 1.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

### -칙령41호의 「석도=독도」 논증-

전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일본은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수차례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한국전쟁의 공백상태를 악용하여 독도침입을 시도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로 전후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영토조치를 기대했던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잠정조치로서 SCAPIN677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구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최종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하려고 미국에 로비하였다는 정황이 있었다. 둘째로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일본은 1951년 처음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에 제기했다. 셋째로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5년 제2차 대전 이전의 독도에 대한 일본과 독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1904년 2월 이후의 러일전쟁에서 독도를 저탄장으로 사용했고, 레이더기지를 설치하였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그 이후 나카이 요사부로를 비롯한 아시카 조업가들이 독도에서 조업하여 멸종시켰고, 그리고 식민지시대에 독도가 한반도 전체와 더불어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다.

반면 전전의 한국은 한국측의 역사와 지리서,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동해의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고 이 두 섬은 날씨가 청명한 날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측 기록인 숙종실록과 일본측 기록인 「월록각서」에는 안용복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침입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이라고 일본측에 항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막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막부는 안용복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용복의 활동을 전후한 16-18세기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영토로서 기록되어 나온다. 18-19세기의 지도는 안용복이후 동해안에 있는 울릉도, 죽도, 독도 의 지명이 서로 혼동을 겪으면서 종래의 인식과 달리 우산도가 죽도로서 비정되어 나오는 지도도 생겨났다. 15세기 이전에는 독도의 지명이 없었으나, 서서히 울릉도의 공도정책과 시기를 같이하여 울릉도 지명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로 호칭되다가 최종

적으로 조선 중기에 걸쳐 울릉도는 울릉도, 우산도는 독도의 지명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이 울릉도 독도근해에 빈번히 출몰하게 되자,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급기야 1900년 칙령41호를 선언하여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필자의 최근 연구로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을 규명했다. 석도가 독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론을 주장하는 일본영토론자들은 아무런 논리적 논증없이 「석도=관음도」라고 주장하고 1905년 시마네현의 죽도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국제법상 독도가 합법한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제각기 다른 시각으로 여러 연구자가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제각기 나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연구의 특성상 논증이 부족하여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필자의 최근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증되지 않은 부분으로 조선의 문호개방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에 있어서 독도영유권 인식을 살펴보면 독도의 명칭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칙령 41호에서 조선시대에 독도의 명칭으로 상당히 정착되어있었던 「우산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새로운 명칭인 「석도」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의 편입사실에 대해 조선조정과 통감부 사이에 독도의 영유권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했다. 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군함 신고호의 일지를 보면, 1904년 신고호가 「리앙코르도암,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쓴다」고 행동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미 獨島라는 발음이 1904년경에 한자어로 獨島로 고착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1904년 이전에 「독도」라는 명칭으로 울릉도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연유는 1900년 우용정의 조사당시에 이미 독도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이규원의 조사보고와 우용정의 조사보고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원은 결국 1도의 2개의 명칭으로서 결론짓고, 고종이 말하는 「송죽도」에 대해, 「교우(僑寓)하는 제인(諸人) 모두가 방근(傍近)의 소도를 이것에 해당시킨다」라고 보고하여 「송죽도=죽도」라고 했다. 또한 방근의 소도 즉 죽도(죽서, 부소우루암)를 본도와 합쳐서 복수의 섬이라고 고종에게 보고했다. 즉 「울릉도, 우산도」는 「울릉도, 죽도」라고 하여 「우산도=죽도」라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우용정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라보떼의 황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울릉도, 죽도, 우산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칙령41호에서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라고 하고 있다. 석도는 울릉도감 배계주를 비롯한 울릉거주민의 인식에 의한 것임에 분명하다. 우산도와 석도가 분명히 같은 섬인데 왜 라보떼는 조선사록의 기록인 「우산도」라고 했고, 칙령41에서는 문헌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도명인 「석도」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미 울릉도에서 석도라는 이름이 상당히

정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산도라는 명칭은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다소 혼동하고 있는 기록도 있어서 기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우산도는 죽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이규원의 보고를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독도의 명칭에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1899년경에 중앙정부가 탁상공론으로 동해의 두 섬에 대해 울릉도와 죽도에 비견하여 우산도를 죽도에 비견하기도 했다. 이것이 1899년 우용정의 현지 주민들의 조사에서 고래의 우산도가 석도임이 새로이 밝혀졌다.

셋째로, 「관음도」에 관해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관음도는 역사적으로 울릉전도에서 분리되어 개별적인 하나의 섬으로 구별된 적은 없었다. 지리상으로 관음도는 울릉전도로서 울릉도 주변의 다른 바위섬과 차이가 없는 섬이다. 관음도가 처음 지도에 등장하는 것은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바위섬들과 같이 지도에 등장하게 된다. 관음도가 울릉전도에서 따로 분리된 적이 없다. 이규원도 울릉전도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다. 우용정의 조사에서 관음도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음도는 사람이 오를 수도 없고, 배를 선착할 수 없는 섬의 가치가 전혀 없는 섬이다. 독도는 오를 수도 있고, 선착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래로부터 몇일간은 피신지로서 사람의 거주가 가능한 섬이다. 칙령41호의 석도를 관음도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로, 역사지리적으로 보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뿐만 아니라 관찬의 고문헌에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이 있다고 한 독도는령다면,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 독도가 누락될 수가 없다. 독도 역사적 사료해석상 우산도=독도이다. 울릉전도=울릉도, 죽도=죽섬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명치시대가 되면서 1871년 조선국정을 조사했다. 이때에 울릉도는 조선영토, 독도는 소속미정의 영역으로 결론을 내렸. 독도 이후 줄곧 1877년 태정관에서도 리지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조선에서 독도의 존재가 무소속이라고 했지만, 이미 조선에서는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로, 1899년대에 지도를 그린 사람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편찬한 것이 아니다. 무인고도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섬으로 판단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도 아닌 동해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평온한 돌섬이었다.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공해와 같은 섬으로 취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조정에서 행정구역을 선포하기 위해 영유권 문제로 1899년의 한일양국의 조사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였고, 무인고도의 독도조차도 영토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용정 일행은 독도를 고지도, 고문헌 기록상의 역사적 권원에 입각하여 조선영토로서 명확히 했던 것이다.

## 2.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최신 발굴 사료를 중심으로-

일본은 ‘죽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이 내세우는 ‘죽도’ 영유권의 유일무이한 근거로서 1905년 2월 22일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 이론에 의한 영토편입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1905년 2월 22일 이전의 독도가 무주지였어야만이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진다. 일본은 이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1905년 이전에 나타나는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미 1905년 이전의 많은 사료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확인되었다. 과거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있는 무인도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년 평균 한 두 건의 독도관련 사료가 발굴되고 있다. 이들 사료는 모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다. 일본영토였다는 사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료들이 이미 많이 발굴되어 한국영토임에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최근 발굴된 몇몇 사료를 검토하여 일본의 사료 왜곡 해석과 ‘죽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검토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최근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일 양국에서 발굴된 사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된바 없는 연구방법이다.

최근 수년간 발굴된 새로운 사료들을 통해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쪽에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일본의 ‘죽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필자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발굴된 사료는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대장성령 제4호」와 「총리부령 제24호」, 「일로청한명세신도」, 박세당의 「울릉도」, 「조선국 ‘독도 도항금지’ 에도시대 팻말」, 「울도군의 배치 전말」, 「壘細壘 小東洋図」 등이다.

둘째, 최근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발굴된 새로운 사료는 일본측 사료도 있고, 한국측 사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본측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모든 사료에서 영토적 권원이 한국영토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료들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왜곡 해석하여 오히려 일본영토로서 영토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일본측에서 주로 사료를 왜곡하는 주체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모임인 「죽도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 마사오, 부좌장 스키하라 류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여 한국영토라는 본질적인 사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에 차 있는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다.

넷째, 일본국민들 특히 외무성관료나 매스컴관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처럼

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 왜곡한 논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죽도’ 영유권 교육을 강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료들처럼 독도 관련 사료가 매년처럼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 아무리 사료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날로 성숙해가는 일본국민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이런 왜곡행위들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발굴되는 많은 사료 중에는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이 축적되어 한국영토로서 해결될 것임에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다급한 재촉에 휘둘림 없이 독도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유유하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한일협정에서 한국의 영토주권의 확립과 일본의 좌절

한일협정은 사실상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대립상황 속에서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강요당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 결과 이 협정은 부득이 한일 양국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다소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주된 과제였다.

한국에 있어서의 독도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주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일본은 한국에 대응하는 형태로 영토주권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서 독도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하는 것이 과제이다. 최근 한일협정 관련 사료가 공개되면서 사실관계가 다소 소상하게 밝혀진 부분도 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는 한일협정 체결이후 비준을 위한 일본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질의, 특히 사회당출신의 전문위원들의 추궁과 정부위원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한일협정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규명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우선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 분석했고, 둘째로는 비준국회에서 독도문제의 어떠한 부분이 논쟁점이 되었는가, 셋째로는 비준국회에서 확인된 한일협정에서의 독도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의 순으로 고찰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1965년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인식의 본질을 규명했다.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서의 독도 지위에 관한 연구는 다소 존재했지만, 일본 의회 속기록을 통해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인식의 본질을 소상하게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필자는 한일협정 체결을 비준하기 위한 일본의 비준국회에서 「죽도문제」에 대한 야당위원의 추궁과 정부위원의 답변을 통해 독도문제의 본질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비준국회에서 경관이 무력으로 독도에 상주함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인이 접근할 경우 발포하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원 들조차도 독도 시찰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제시대에 이어 전후에도 일부 일본인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독도의 광산 채굴권과 어업권을 승인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이번 한일협정의 비준국회에서 최대 논점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유일한 현안이므로 교환공문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의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셋째, 결국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는 내용의 「독도밀약」으로 교환공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비준국회에서 줄곧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한국정부가 동의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또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분쟁지역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끝내 동조하지 않았다.

#### 4. 한일협정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포기 - 비준국회(1965년6~12월)의 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사이에 국교회복을 위한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중심의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진영에 편입이 된 일본은 미국에 의해 한국과 국교정상화가 강요되었던 것이다. 한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국이 중재하고 있어서 반드시 양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는 영토주권에 해당되는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한일협정에서 한일 양국사이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고찰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1965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본국회에서 비준되기까지 정무위원과 전문위원들 사이에 발언을 중심으로 독도문제의 본질을 분석했다. 특히 비준을 위한 토론과정에 공술인과 참고인들의 견해와 시이나 외무대신과 사토 총리의 정치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그 진실관계를 규명했다.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최근 국회의사록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필자는 일본의 한일협정 국회비준과정에서 「죽도문제」를 둘러싼 야당위원과 정부위원 간의 공방을 통해 독도문제의 본질을 고찰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번 한일협정의 비준국회에서는 공술인과 참고인등을 통해서 죽도는 풍부한 어장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역사적 권원으로 볼 때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한 영토편입조치는 일본에게 유리하다. 이번에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려고 8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을 했지만, 이승만 라인(평화선)은 철폐되었지만 죽도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교회복이라는 중대한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한일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독도문제에만 집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북방영토와 같이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교를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죽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한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향후 영토문제 해결에서 일본에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도영토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영토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정부도 겉으로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심 한국도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상 일본이 조정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시이나 외무대신과 사토총리도 이번 협정에서 독도의 분쟁화라든가 영토화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으로 '조정'에 의한 영토해결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하여 한일협정 이후 양국관계가 호전되면 적극적으로 독도문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협정에서 독도문제에서 양보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한일협정에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했다. 일본은 「교환공문」을 삼입하여 최소한의 체면만 살린 셈이다. 한국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교환공문」을 포함한 조약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내심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 5.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 -독도 밀약설과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논점을 중심으로-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면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이 대립하게 되었고, 특히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공산진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미국의 재촉으로 종전 후 지연되고 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15년 만에 합의하게 되었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대표가 도쿄에서 기본관계, 어업,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화재 및 문화협력, 분쟁해결에 관

한 제반 조약에 서명했고 12월 18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했다.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4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기본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둘러싸고 그 진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도 좀처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봉합하는 형태로 애매하게 처리한 3현안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독도영유권문제, 평화선의 법적지위,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였다. 비준국회에서 일본사회당은 3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한국국회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했고, 정부 여당은 근린국가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3현안을 그대로 국회에 상정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사회당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여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는 이들 3현안 중에서 특히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고찰했다. 이것은 독도영유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독도문제는 현재에도 양국이 대립되고 있는데, 당시 한국정부는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했다는 주장이고, 일본은 「죽도문제」를 한일협정의 「분쟁해결을 관한 교환공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다른데,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이후 45년이 지나면서 「독도밀약설」이라든가, 한일기본조약이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필자는 한일기본조약에 있어서 「죽도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한일기본조약에서 독도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그 이후 45년간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한일기본조약의 독도관련규정의 본질을 분석했다. 셋째로는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절차를 밟는 과정에 정부요인과 국회의원 사이에 일본국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분석했다. 특히, 시기는 1965년 전후의 일본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선행연구로는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사료의 중요성에서 이 사료를 연구하는 학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독도영유권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 협정체결 직후의 비준국회에서 논쟁과정을 분석하여 「독도밀약설」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연구는 없었다.

필자는 독도밀약설과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일협정 당시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조치의 정치성과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일본정부가 비공개로 하고 있던 한일협정 관련자료가 공개되었다. 그 자료 안에는 독도밀약과 관련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독도밀약에 관한 당시 협정체결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독도밀약이 구체화되었다. 독도밀약과 관련되는 사항이 당시 한일협정 비준을 위한 국회에서 국무대신과 야당위원 간의 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독도밀약설은 일본이 한일협정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에 대해 「죽도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독도밀약에서도 한일협정에서도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밀약을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해결이 해결’이라는 취지아래 한국에 제안하여 합의한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었다.

셋째, 당시 일본정부는 「죽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지만 일본국민에 대해 일괄타결로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한다고 호언장담하였기에 더욱 「죽도문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죽도문제」가 무난히 해결되었음을 표명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사실 교환공문은 법적인 해석으로는 독도와 무관한 것이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에 대해 교환공문을 통해 한일양국이 공식적으로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독도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 것은 일본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발언이다.

넷째, 현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일본국민들에게도 영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현 일본정부의 이러한 독도인식은 독도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해에서 생긴 것이다. 한일협정에서 일본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묵인했던 것이다.

## 6. 일본 국내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찬반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둘러싸고-

세계는 국제화, 지구화시대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이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정치, 경제면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유럽공동체와 북미지역의 NAFTA, 동남아시아의 ASEAN 등이 형성되어 역내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의 동아시아 각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서 역내협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이러한 상황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 경제규모에 버금가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 일본은 이에 앞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의 신뢰 회복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동아시아 3국 사이에 현안으로 남아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 결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일 등과 같은 과거문제를 청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

출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직시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간의 독도문제에 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으로부터 불신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반드시 일본영토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일본국내의 갈등구조를 고찰했다. 현 민주당정부는 국제화 지구화 인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독도문제로 한일 간의 분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는 적극론자와 소극론자가 혼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내에는 과거문제를 청산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진보지식인층과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보수지식인층으로 구분된다. 정치권에는 민주당의 진보그룹과 자민당의 보수그룹을 중핵으로 하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히 일본정부가 2009년 12월 25일 문부과학성이 2013년 전면개정을 위해 독도문제에 관해 「중학교 해설서에 입각하여 북방영토 등 영토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둘러싼 일본국내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고찰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없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민주당정부 이전의 양상, 민주정부요인 및 정치권, 학계, NGO단체, 주요 일간지 등의 성향을 분석했다.

필자는 최근 연구 성과로서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개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국내에서 죽도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와 소극론자 간에 약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런데 ‘죽도’라는 명칭을 직접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죽도 영유권의 적극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한일관계를 그다지 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소극적인 ‘죽도’ 영유권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당정부 측과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문부과학성 관료들은 ‘죽도’ 명칭을 명기하지 않아도 죽도 영유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입장을 공정하게 교육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 모두 일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셋째, 적극적인 ‘죽도’ 영유권자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죽도’ 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죽도’ 명칭을 누락한 것은 ‘죽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주체는 보수정치인, 보수언론으로서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시마네현 관계자 등이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소 한국을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2008년 7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을 때와는 달리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잘못된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다섯째, 국가 간의 외교에는 ‘배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은 ‘배려’라는 검은 장막을 치고 계산된 엄청난 국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영토정책에 있어서 ‘조용한 외교’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 7. 한국의 독도 영토 관리의 문제점

### -대한항공 <<Morning Calm>>의 <동아시아 항공로지도의 오류-

대한항공이 발행한 기내의 각 좌석등 뒤에 비치된 <<Morning Calm>>(2009년 10월호)의 항공노선도 4장의 지도 중 <동아시아 항공로지도(KOREAN AIR EAST ASIA ROUTE-MAP)>에 독도영유권 표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한일, 중일, 러일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나 있다. 이들 영토분쟁은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분쟁의 단서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토분쟁이다. 현재처럼 최종적인 분쟁상태가 된 것은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단행한 영토정책과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를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쿠릴열도 남방4도(일본명 북방영토)는 역사적 권원은 일본에 있으나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다오위다오섬(일본명 센카쿠제도)은 역사적 권원은 중국에 있으나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은 물론이고 실효적 지배도 한국이 하고 있다.

본 책자에는 국경선 표기에 있어서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국경선 내에 포함시켜서 러시아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오위다오섬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경선 내에 포함시켜서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국경선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영토로서도 표기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존중하려는 입장에 있다.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토주권은 현재의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 상대국의 영토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사회가 되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시민으로서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성이 강한 대한항공이 국가의식이 결여되어 기내책자에서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혼란하게 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조작하여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작하여 일본영토화를 노리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화의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2010년 G20개국회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수많은 세계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관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무책임한 책자발간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을 조장하여 국제평화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신속히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 8. 독도 영토의 미래와 대응 -중일간의 영토분쟁으로 보는 독도영토에 대한 교훈-

최근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에 영토분쟁이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어선이 분쟁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섬)에 접근하게 되어 일본 해양순시선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서로 충돌했던 것이다. 일본 순시선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감금했다. 이로 인해 국내법위반이라고 하는 일본과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립되었다. 국민감정이 극에 달한 중국은 대일 무역제제 및 정치적 강경외교로 일본을 압박했다. 결국 일본이 후퇴하여 선장을 돌려보내어 극한 대립상태는 면했지만 여전히 양국관계는 냉각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이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동아시아지역의 영토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토침략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와 쿠릴열도 남방4실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효적으로 영토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쿠릴열도효적으로 점유하회에서 북방영토의 날을 정하여 연일가두시위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실효적으로 을 찻근 초등,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의무화한다점유방침을 정했다.

여기서 일본의 모순은 타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면

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최근 중일 간의 영토분쟁도 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동아시아 3국간의 영토분쟁을 보면, 모두 제국주의의 영토침략에 기인한 것이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보면 분명한 한국영토이다. 그래서 한국은 전후 줄곧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센카쿠제도는 역사적으로는 중국영토로서 권원이 있지만 전후 영토주권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 2만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하는 영토적 권원이 일본에 있지만, 2차 대전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러시아의 점령을 묵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도는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유산에 집착하여 영토주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중일 간의 영토분쟁이 국제사회에 노출된 것처럼, 독도에도 일본우익들이 언제 침범할지 모른다.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독도가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노출된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사람이 거주하는 것 이상으로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것은 없다. 만일 한국인이 거주하는 독도에 일본이 침범하였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유인도화의 방법으로는 입지조건으로 봐서 독도에 숙박시설, 자료전시관, 회의실 등을 갖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상주하는 섬이 된다면 국제사회는 두 눈으로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한일관계

방광석(성균관대)

## 머리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고종을 강제적으로 퇴위시키는 등 일본정부를 대표해 대외침략을 진두지휘하다 안중근에 의해 사살당한 ‘침략의 원흉’, 또는 제국주의자, 침략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근대국가 건설의 최대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대화폐제도의 확립, 내각제와 화족제(華族制)의 창설, 헌법제정, 청일전쟁 등을 주도하면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 대등한 근대국가의 건설을 추진해나간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지배과정에 관해서도 이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토가 적극적인이든 점진적이든 최초부터 한국병합을 전제로 ‘보호통치’를 실시했다고 보고 ‘시종병합론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지배 또는 한국병합과 관련해 ‘문치파(文治派)’와 ‘무단파(武斷派)’의 대립을 강조하는 견해가 두드러진다. 이토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 ‘문치파’는 병합에 소극적이었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가쓰라 타로(桂太郎),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등 ‘무단파’는 병합에 적극적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후자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토에 대한 한·일간 상반된 이미지와 상이한 평가는 이토의 발언과 행동의 일부분만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토의 정치자세와 사상의 전체상을 염두에 두고 그의 대한정책의 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한국의 보호국화와 이토

이토는 1873년 ‘정한론’정변 이후 40년 가까이 정부의 요직에 머물며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에 많은 업적을 쌓아 ‘근대일본의 설계자’로 불린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헌법을 비롯한 근대국가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이토는 1882~83년 유럽 입헌제도조사를 통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주입헌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확정하고 귀국 후 국가기구를 개혁해 나갔다. 1883년부터 궁중개혁에 착수해 여관(女官)을 정리하고 천황의 정치군주화를 꾀하는 등 입헌정치를 대비해 전통적인 궁중제도를 서양식으로 개혁했다. 1884년에는 영국의 귀족제를 모범으로 화족제(華族制)를 개혁하고 작위제를 실시했다. 천황에게 충성하는 보수적인 정치세력을 조성해 안정적인 정치운명을 하려는 것이었다. 1885년 태정관제(太政官制)를 개혁해 근대적 내각제도를 수립하였으며 1888년 천황의 자문기관인 추밀원을 설치하였다. 또한 이토는 헌법제정과정을 주도했다. 1886년부터 시작된 헌법기초 작업은 당시 수상이었던 이토

와 측근 참모들이 비밀리에 회합하면서 진행되었고 고용외국인의 의견도 반영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이토가 쥐고 있었다. 1888년부터 시작된 추밀원의 헌법 심의에서 이토는 보수적인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헌법구상을 관철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89년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듬해 국회가 개설되어 일본에서 입헌정치가 실시되게 되었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이토는 팽창주의자 내지 '대국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1873년의 '정한론' 정변에서 '내치파'에 속했지만 대외팽창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며 1874~75년의 타이완침공과 강화도사건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추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관련해 1884년의 갑신정변과 1895년의 명성황후시해사건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국과 싸운 청일전쟁은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외상과 함께 직접 도발한 것이었다. 20세기 초 이토는 대러시아 외교에서 '문치파'로 불리며 전쟁 보다는 협상을 우선시하는 측면을 보였지만 대륙으로 팽창하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노선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였으며, 통감으로서 한국의 식민지배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이다. 1904년 3월 7일 이토는 한국황실 '위문' 특파대사에 임명되었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 한국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국황제를 압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는 1898년 청국여행에서 귀국할 때 한국에 들린 이후 고종과 두 번째 대면이었다.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주저하거나 그 조인에 반대하는 고종 황제와 반일관료에 압박을 가해 의정서를 앞으로의 한일 '보호'관계의 기축으로 인정시키는 것이 이토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5월 30일에는 원로회의에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이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결정과정에 이토는 원로 자격으로 참여했다.

1905년 9월에 조인된 러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한국을 피보호국으로 삼기 위해서는 합의에 기초한 보호조약이 필요했다.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 외무대신과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주한공사는 이토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토는 그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차 한국에 파견되었다.

'을사조약'은 널리 알려진 대로 한국주둔 일본군의 무력시위 속에서 이토가 황제와 각료를 한 사람씩 다그치면서 협박해 조약을 체결시켰다. 이토는 서울에 도착한 뒤 곧바로 고종을 알현해 '보호조약'의 체결을 요구했다. 고종은 여러 이유를 붙여 이를 거부하려 했으나 이토의 강경한 자세에 점차 의지가 약해졌다. 이토는 외교권만 위탁하면 내정은 완전히 자치할 수 있다고 호언하면서 결정이 늦어지면 점점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조약안을 정부에서 먼저 논의한 뒤 재가를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고종의 칙어를 얻어냈다. 11월 16일 이토는 정부 대신들을 소집해 협박하여 마침내 18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한국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 사이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의 체결 뒤 일본은 이 사실을 서둘러 외국에 통보하고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던 서양 각국의 외교사절은 12월 초순까지

거의 한국을 떠났다.

이토가 귀국한 뒤 일본정부는 서둘러 통감부를 설치했다. 내외적으로 일본의 한국 보호를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에서는 통감부를 문치조직으로 삼으려는 의견과 무관(武官)조직으로 삼으려는 의견이 대립하여 논의했으나, 통감에 임명된 이토가 강력하게 주장한 점도 작용해 통감부를 외무성에서 분리하여 천황 직속으로 삼자는데 합의하여 문관인 통감이 한국주둔군에 대한 명령권을 갖게 되었다.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보호국화에 공을 세운 뒤 일단 귀국했던 이토는 1905년 12월 21일 통감에 임명되어, 1906년 3월 2일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2월 5일 입헌정우회의 통감부임 송별회에서 이토는 “한국에서 보면 보호국화는 독립을 잃는 것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보호가 한국의 독립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민을 ‘열복(悅服)’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당시 많은 한국민은 이토의 말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서울에 도착한 이토 통감은 먼저 한국의 ‘시정개선’을 위한 급무로서 차관문제, 보통교육의 보급, 지방경찰력의 확장을 들고 여러 대신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황제의 재가를 받아 실행하겠다고 통고했다. 이토는 통감으로서 최초로 황제를 알현할 때부터 본연의 업무인 외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시정개선’만을 강조한 것은 내정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한국정부에게 통감부의 의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이용했다. 이 협의회는 이토가 부임한 직후인 3월 13일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통감이 직접 한국정부의 각 대신을 통감관사로 소집해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고 그 집행을 강제하는 자리로 사용되었다. ‘시정개선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의장은 언제나 통감 또는 부통감이 맡았으며 회의의 내용도 협의가 아니라 항상 통감 측이 강요하는 것을 한국의 대신들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행해졌다.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경제적 지배권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토의 한국인식을 살펴보면, 그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것들을 개혁할 수 없는 한국인을 ‘무능력자’, ‘야만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부터 한국을 구해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침략을 정당화한 다음 각 ‘시정개선’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헌병경찰제도, 재정제도, 화폐금융제도, 토지제도, 교육제도 등의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것들은 개혁의 근대적인 면을 내세워 반발을 억제하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원활하게 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 2. 이토의 한국지배구상

이토는 한국의 보호 및 병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토는 통

감 취임 이래 한국의 보호와 ‘부액(扶掖)’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민에 대해 자주 ‘한국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 ‘병합할 필요는 없다’고 명언했는데 그것은 일본에 의한 ‘보호통치’의 정당성을 한국민에게 ‘열복(悅服)’시키기 위해 강조한 것이며 장래의 ‘병합’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토가 원로(元老)로서 대부분의 대외 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정부의 한국지배방침에는 이토의 의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토는 한국이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다른 정부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병합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실시된 이토의 ‘시정개선’ 정책은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위로부터는 외국의 관여를 기대하는 고종의 행동, 아래로부터는 직접 반일무장투쟁을 실행하는 의병운동과 일본으로부터의 기업자본대여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의 활발한 전개가 그것이다. 이에 의해 ‘보호통치’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압박과 비난이 고조되자 이토의 태도도 서서히 변화해간다.

1907년 러일협약 교섭 때 이토는 당시의 외상 하야시 다다스(林董)에게 병합의 가능성을 표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병합(annexation)’이란 단어는 외교적 필요에서 끄집어낸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이토가 ‘한국문제’의 최종적 해결수단으로서 ‘병합’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토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선 3월 원로회의에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의 “더 한층의 발전을 러시아에 승인시킨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대(對)러시아 협약안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07년에 들어 이토는 지금까지의 ‘보호통치’의 형태에 변화를 주려고 했다. 5월 22일 박제순내각을 경질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해온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했다. 6월 14일에는 새로운 내각관제를 공포해 국정의 책임을 내각에 지우고 황제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 이렇듯 이토는 반일저항운동을 억눌러 ‘보호통치’를 ‘한 걸음 진전시키는’ 정책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본정부가 대한정책을 급속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때마침 6월 발생한 헤이그 밀사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토는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킴과 아울러 일거에 한국의 내정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했다. 7월 7일 이토는 이러한 행위는 일본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宣戰)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각총리대신을 통해 황제에게 알렸다. 일본정부에서는 이토의 요청을 받아 1907년 7월 10일 원로·내각회의에서 대한처리방침을 결정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조선의 내정 전반을 장악할 것, 그 실행은 이토에게 일임한다는 것이었다. 이토의 생각도 정부의 방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토는 고종을 퇴위시킴과 아울러 통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정미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7월 24일 체결된 정미조약은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에는 통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 실제로 한국 내정의 전권을 장악하는 내용이였다. 이 조약에 의해 국가의 정치의사결정은 통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 황제의 지위는 단순한 재가기관으로 전락했다. 8월에는 군대 해산도 행해져 한국은 ‘실질적’으로 병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 일본은 병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한국 국내세력의 격렬한 저항 운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 등 국제정세도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원로를 비롯해 일본정부 내의 다수 의견도 즉시병합에는 소극적이였다.

이토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병합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정미조약에 의해 한국 지배상 ‘더 한층의 발전’을 거두는 것이 가능했다. 고종을 퇴위시켰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의 형태를 남겨 외국으로부터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의 독점적인 보호통치가 가능한 ‘실질적 병합’을 달성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토는 이러한 ‘1907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려고 했다. 그것은 한국보호라는 명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토는 정미조약의 체결 이후 1909년 통감을 사임할 때까지 사법제도의 정비, 은행 설치, 교육진흥, 식산흥업 등 이른바 ‘자치육성정책’을 전개했다. 일본정부도 이토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했다.

그렇다면 ‘실질적 병합’인 정미조약 이후 이토는 한국통치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1907년 7월 31일 이토는 서울의 일본인클럽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합병할 필요가 없다. 합병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한국은 자치해야 한다. 일본의 지도 감독이 없다면 건전한 자치는 할 수 없다”고 말해, 합병을 부정하고 일본의 지도 감독에 의한 ‘자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보다 앞서 7월 29일 신문기자단에게 행한 강연에서 향후 정책을 설명하면서 독일연방 안의 뷔르템부르크와 바이에른을 한국에 비유하며 ‘연방’제 구상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이토의 한국지배구상은 ‘자치육성’을 통해 재정독립을 이룬 뒤 ‘연방’제의 형태로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군대의 해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행해진 정치적 발언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은 낮았다.

한편 이토의 한국지배구상으로서 최근 간행된 『스에마쓰 자작가 소장문서(末松子爵家所藏文書)』에 한국에 상하 양원을 조직하고 한국인 대신으로 구성된 책임 내각을 둔다는 메모가 실려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토가 ‘자치식민지’ 내지 ‘식민지자치국’과 유사한 통치형태를 취하는 합병을 구상했다고 유추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당시 이토는 동양척식회사의 운영에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임 원로의 입장에서 항상 다른 정부 수뇌와 의견을 조정, 타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갔기 때문이다. ‘무단파’인 가쓰라, 고무라, 데라우치 등은 한국병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육성정

책'을 추진하는 이토와 알력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양자의 대립은 대한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립은 아니었다. 병합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 전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필시 이토를 포함한 원로·각료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

### 3. 한국병합과 이토

결국 이토는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을 수용했다. 이에 관해서는 1909년 4월 10일 당시의 가쓰라 수상과 고무라 외상이 도쿄의 레이난자카(靈南坂)에 있는 관저로 이토를 방문해 한국병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급진적 병합에는 반대한 이토가 스스로의 방침을 바꾸어 1909년 4월 시점에 즉시병합론에 동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토로서는 명목적일지라도 독립의 형식을 취하면서 사법제도의 정비, 은행설치, 교육진흥 등 '자치육성정책'을 실시하는 편이 일본의 한국지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보호통치'가 한국민을 '열복(悅服)'시키지 못하고 의병운동 등 한국민으로부터 격렬한 저항과 국내의 반대에 직면하여 그 방침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감 취임 이래의 이토의 '보호통치' 노선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토는 병합에 드는 일본의 부담을 들어 즉시병합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의병운동이 본격화하는 1907년 후반부터는 '보호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점차 병합론으로 기울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민중이나 관리 혹은 신문기자에 대한 연설 등 다양한 자리에서 '병합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온 이토로서는 자신의 입으로 '병합'을 언급할 수는 없었다.

1909년 6월 14일 이토는 통감직을 사임하고 추밀원 의장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3년 반에 걸친 '보호통치'가 한국 국민을 승복시키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한국민의 저항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비판이 일어 더 이상 '한국독립'의 언설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토는 '보호통치'의 의욕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병합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생각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임 통감에는 부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취임했다.

그 직후인 7월 6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한국을 병합해 이를 제국 판도의 일부로 삼는 것은 반도에 우리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한국병합에 관한 건」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토는 통감직에서 물러났지만 사법권위탁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원로로서 이후에도 대한정책에 계속 관여해나갔다.

### 맺음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토는 메이지정부의 한국지배방침의 결정과정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반영시켜나갔다. 통감 취임 후 일본정부의 한국지배방침이 결정되자 그것을 바탕으로 ‘보호통치’를 실시했으나 ‘시정개선’ 정책이 국내외로부터 반대를 받아 좌절되자 대한정책을 전환해 내정권까지 장악하는 ‘실질적 병합’에 착수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원로로서 항상 다른 정부 수뇌와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나아가 이토는 한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보호통치’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즉시병합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토는 메이지 초기부터 시대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각 정치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 자신의 견해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다면 노선을 수정하곤 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치가의 성향은 한국지배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관철되었던 것이다.

이토는 한국의 식민지배를 전면에서 지휘하기 위해 통감이 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따라서 ‘보호통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한국병합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초에는 한국의 내부 상황이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보호통치’가 한국지배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식민지배의 기반이 정비되고 동시에 서양 열강의 승인을 얻는 등 ‘적당한 시기’에 도달하면 병합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대한강경론을 주장하는 다른 정치세력과 달리 이토는 한국병합에 관해 점진론을 취하고 정책 전환에 있어서 신중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나카무라 기쿠오 지음, 강창일 옮김, 『이등박문』, 중심, 2000.  
 한명근, 『한말 한일합방론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유재곤, 「이등박문의 대한정책(1906-1909)」 (조항래 편,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방광석,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혜안, 2008.  
 이성환, 이토 유키오 편,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이종각, 『이토 히로부미-원흥과 원훈의 두 얼굴』, 동아일보사, 2010.  
 上垣外憲一,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2000.  
 海野福壽, 『伊藤博文と韓國併合』, 青木書店, 2004.  
 伊藤之雄, 『伊藤博文-近代日本を創った男』, 講談社, 2009.  
 瀧井一博, 『伊藤博文-知の政治家』, 中公新書, 2010.  
 小川原宏幸, 『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朝鮮社會』, 岩波書店, 2010.

# 한국독립운동의 주체와 전개양상

김 용 달(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

## 1. 독립운동이란

독립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민족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거나 반(半)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구국운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국운동이 반(半)식민지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독립운동이 된다. 독립운동은 일종의 식민지 해방운동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은 구국운동을 선행운동으로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중국과 같이 구국운동만으로 반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국운동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전개된 구국운동은 독립운동의 선행운동인 것이고, 구국운동인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한국독립운동은 한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전개된 구국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910년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서부터는 식민지 해방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면서 독립운동은 대단원을 내렸다고 하겠다.

한국독립운동의 주체는 한민족이었다. 친일파로 반민족행위에 가담한 일부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다수의 민족구성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민족구성원들은 각자의 이념과 방략을 기초로 세력을 결집하고 조직체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어 갔다. 이들은 국내를 비롯하여 서·북간도를 중심한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관내, 하와이와 미국본토를 중심한 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의 최고 가치는 민족 독립이었고, 자주적 민족국가의 건설이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목표였지만,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상태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의 경우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의 회복, 즉 일제의 식민통치 체제와 권력을 완전히 타도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였던 것이다.

## 2. 독립운동의 조건은 어떻게 변화 하였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민족은 우월한 무력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게 되었다. 1876년 조선을 개항시킨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에 이어 1904

년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수행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용산에 한국주차군사령부를 설치, 군대를 주둔시켰다.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군대를 파견하였던 일제가 또 다시 러일전쟁을 기회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 사실상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다.

이러한 무력을 배경으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자주권과 국권을 침탈하면서, 한국을 식민지화하여 갔다. 러일전쟁의 승리와 열강들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한민족의 반일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일제는 1910년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았다. 의병들의 강력한 저항을 어느 정도 진압할 무렵인 1909년 7월 일본내각은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하였고, ‘합방’이 한국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기 위해 일진회의 이용구·송병준 등 친일파를 내세워 ‘합방’에 대한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대와 경찰들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한민족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1910년 8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발표한 것이다.

1910년 한민족은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이후 한민족은 1945년 해방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만 35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한민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흔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압적이고 가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민족 전체가 일본의 공동노예 상대로 편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바로 일제 식민지 지배였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다른 제국주의의 그것과 형태나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다. 자원의 약탈·노동력의 착취·국토의 유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형태를 흔히 ‘무단정치’ ‘문화정치’ ‘민족말살정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추진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본질은 한민족을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민족의 문화와 민족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민족말살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 일관된 식민지 통치의 본질이자 목표였다. 일제 식민통치자들이 내세웠던 ‘동화주의’ ‘내지연장주의’ ‘내선융화’ ‘내선일체’ ‘황민화’ 등의 표현들이 모두 그것이다.

이와 같이 한민족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한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생존권과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었고,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되찾아 자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조건하에서 한민족이 당면한 최대의 역사적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 3. 독립운동의 주체와 전개양상

독립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식민지 상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국내를 비롯하여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세계 각 지역에서, 또 그 방법이나 양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갑오왜란’과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의병들이 봉기하였고,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반(半)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자, 유생과 농민들이 주도한 의병이 재봉기하여 일제를 무력으로 몰아내고자 하였고, 개화지식인들은 국민의 실력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고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려는 반(反)침략 구국운동이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반(反)침략 구국운동은 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하였다.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독립운동의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고, 주요한 방략으로 독립전쟁론에 합의를 이루었다. 독립전쟁론이란 민족의 군대를 양성하였다가 일제가 중·미·소 등 열강들과 전쟁을 일으킬 때, 이들과 함께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전열을 정비하고 민족 역량을 축적해 갔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면서 독립운동은 크게 변화 발전하였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적 대단결이 이루어지면서 독립운동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 산물의 하나로 독립운동을 주도해 갈 대표기구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또 만주지역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의 항일무장투쟁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3·1운동은 이후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을 겪고 난 1920년대는 독립운동의 양상이나 주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독립운동이 다양한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봉오동·청산리대첩으로 상징되는 만주지역 독립군의 강력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국내에서는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부르주아민족운동을 비롯하여 농민운동·노동운동·형평운동·여성운동·학생운동 등 사회 계(諸) 계층이 주체가 된 대중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이 수용되면서, 정치적 이념에 기초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되고 있었다. 이는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진 것이고, 그만큼 독립운동의 사회적 기반이나 계급적 지평이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이 다원화하면서 민족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하였다. 독립운동을 통할할 임시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1920년대 중반 이래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대동단결을 이루어 민족대당체를 결성하려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다. 1927년 국내에서 좌우세력들이 연합하여 신간회를 조직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외에서의 유일당운동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과 시도는 해방 때까지 끊임없이 추진되어 갔다.

1930년대에는 독립운동 전체를 통할할 조직은 없었지만, 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한국독립군·조선혁명군을 비롯한 만주독립군들은 반만(反滿) 항일군과 연합하여 독립전쟁을 계속하였다. 또한 윤봉길 의거로 중국 관내지역의 독립운동도 활기를 띠었고, 조선혁명간부학교·낙양군관학교 등을 통해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기초한 한국독립당·민족혁명당 등 독립운동 정당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이들 사이에 통합운동이 추진되면서 독립운동의 이론과 방략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1940년대에 들어와 임시정부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조국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독립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중정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그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어 좌익진영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참여하였고, 조선민족혁명당도 임시정부로 합류하였다. 중국공산당 지역인 연안에서는 1942년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결성되었고, 국내에서도 1944년 조선건국동맹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상호 연락을 통해 통일전선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미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추진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는 순간까지 활동하였다.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 방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것은 독립전쟁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전쟁론은 한말 의병들의 무장투쟁론과 계몽운동의 실력양성론이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국외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독립전쟁론의 주요 형태는 무장투쟁이었다. 독립군을 양성하여 무력으로 일본군과 항전하는 것이 무장투쟁이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만주지역 독립군 부대는 수없이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고, 1920년에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는 대첩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중국의 반만항일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조선의용대가 중국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1941년 미·일 간에 태평양전쟁이 발생한 뒤에는 한국광복군은 미국의 O.S.S와 연계하여 공동작전으로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 추진하였다.

일제의 침략원흉을 암살하거나 식민통치기구를 파괴하는 의열투쟁도 독립운동의 주요한 방략이었다. 1908년 전명운·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처단한 것이나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격살한 것,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의 일왕저격, 4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그리고 1919년 암살·파괴활동을 위주로 하는 의열단이 결성되어, 국내와 상해 등지에서 활발한 의열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의열투쟁은 적은 인원과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었다.

또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잔악성을 열강들에게 알리고, 한국독립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광무황제가 1907년 네덜란

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이나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것 등이 모두 그러한 활동이다. 특히 외교활동은 이승만을 중심한 미주동포 일각에서 주요한 방략으로 삼아 전개되었는데,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더불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외에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향상하려는 실력양성론도 독립운동의 주요 방략이었다.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이나 경제적 후원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대중들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노동운동·농민운동·학생운동·여성운동·교육운동·국학운동·언론운동 등도 모두 독립운동의 방법이자 수단이었다.

#### 4. 독립운동의 목표와 이념

독립운동의 목표는 한마디로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자주적이고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에 있는 일제의 모든 식민통치 권력과 기구를 완전히 척결하고, 한민족을 기초로 한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독립운동은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단계, 즉 파괴단계까지는 동일한 목표하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 목표를 달리하기도 했다.

한말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은 국권회복이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념이나 노선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생과 농민들이 결합한 의병전쟁은 중세적 복벽주의(復辟主義)·보황주의(保皇主義)였고, 개화지식인들이 주도한 계몽운동은 공화주의라는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다음 단계에서의 목표가 달랐던 것이다. 1910년대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원래의 대한제국을 다시 건설하자는 주장과, 공화주의에 입각한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복벽주의 노선으로, 후자는 공화주의 노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선과 이념의 차이는 3·1운동을 계기로 극복되었다. 3·1운동 당시 일부 지역에서 신민의식(臣民意識)에 의해 봉기한 경우도 있고, 또 만주의 대한독립단 등이 복벽주의 노선을 지향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3·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복벽주의 노선은 극복되었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로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결같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하였다. 3·1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목표와 이념이 근대국민국가 수립과 공화주의로 합일되어간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와 정치이념은 다원화되었다. 자유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 새로운 정치이념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적 이념을 기초로 하여 결성된 수많은 단체들이 나타나면서, 독립운동의 목표도 다양해졌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는 데까지는 목표를 같이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민족국가건설 문제에 있어서는 각각의 정치이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노동자·농민이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 정권의 수립을 지향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일제와 타협하여 자치권·참정권 획득을 주요 목표로 하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던 1920년대 후반에는 대공주의(大公主義)와 삼균주의(三均主義)라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생겨났다. 대공주의는 안창호에 의해, 삼균주의는 조소앙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념과 목표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동의 정치이념으로 창안된 것이 대공주의와 삼균주의였다. 대공주의는 민족평등·정치평등·경제평등·교육평등을,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치사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살 수 있는 민족국가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1930년대에 독립운동 정당들이 결성되면서, 독립운동 이념은 더욱 발전되어 갔다. 1930년 임시정부 인사들이 주도하여 결성한 한국독립당은 삼균주의를 채택 수용하여, 그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도 마찬가지였고, 1935년 5개 정당 및 단체가 통일을 이루어 결성한 민족혁명당에서도 삼균주의를 수용하였다. 이외에 공산주의 계열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 무정부주의 계열의 조선혁명자연맹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당 및 단체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통일운동이 추진되면서, 삼균주의는 좌우의 독립운동 세력의 공통된 정치이념과 노선으로 정립되어 갔다.

이러한 기초 위에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는 중경에 정착하여 독립운동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한 임시정부가 광복후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다. 건국강령의 기본골격은 1930년대 좌우 독립운동 정당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간 삼균주의였다. 핵심 내용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건설’이었고,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의한 독재의 존립과 창출을 완전히 배격하고 민족구성원 최대 다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독립운동의 최종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관내지역에서, 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성과였다. 1940년대에는 중국 관내와 임시정부 이외에도, 중국공산당 지역인 연안의 조선독립동맹과 국내의 조선건국동맹이 독립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세력이 추구한 이념과 목표도 중국 관내지역의 그것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고, 임시정부를 비롯한 이들 사이에 상호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방 직전까지 통일전선을 이루려는 노력과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 5. 독립정신의 계승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독립운동의 정신 위에 성립된 것이다. “유구한 역

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에도 그러한 정신이 담겨있다. 독립정신의 토대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신을 이어 갈 책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계층간, 지역간 반목과 갈등의 심화 현상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고위층과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 공존공생을 포기한 것 같은 노사대립,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나홀로식’ 사회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욱이 작게는 넘비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 크게는 지역감정으로 분출되는 지방색이나 지방열의 문제는 민족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지방색이나 파벌, 운동 노선과 방략의 차이, 운동주체의 이념대립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항상 연대와 통합을 지향하며 민족통일을 이루어 민족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같은 민족통일의 정신은 종교와 계층, 지역과 신분, 성별과 연령 등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거족적이며 전국적인 만세시위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이 잘 함축하고 있다. 또한 각지에 성립된 임시정부가 이념과 독립운동 노선, 그리고 지방색을 극복하고 통합 정부를 이루었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더욱이 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에 맞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화합을 이루어 가며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를 결성했던 사실은 아주 귀중한 역사적 경험이다. 중국에서도 1920~30년대에 걸쳐 좌우 독립운동 세력들이 한데 모여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40년대 중경에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좌우 독립운동 세력이 통합을 이루어 조국 광복을 맞이했던 사실은 정말 고귀한 역사적 자산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사회가 과거에 서로 화합하며 역사적 과제를 함께 풀어갔던 특별한 경험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각계각층의 독립운동으로 표출된 독립정신은 8·15광복 직후 정식으로 성립된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6·25전쟁 과정에서 국가수호정신으로 승화 발전된 독립정신은 이후 민주정의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3·15의거와 4·19혁명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아가 그것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계승 발전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사회적 과제인 민주화를 실현해간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사회 민주화를 성취하여 민주발전을 이룩한 지금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일이다. 이 일의 출발점 또한 국난극복의 원동력이자 민족발전의 정신적 자산인 독립정신의 계승과 구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광복 이후 65년의 역사가 흘렀다. 지난 65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수립과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역사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과거 65년의 역사가 달성하지 못한 꿈을 이루는 것이다. 역사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광복 이후 65년의 역사에서 이루지 못한 한민족의 가장 절박한 꿈은 무엇인가. 남북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목마르다. 우리 민족은 화합과 통일에 갈증 난 민족이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었으니, 더욱 그렇다.

민족 화합과 통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대하(大河)는 없단 말인가. 대하를 찾아갈 정신적 자산조차 없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민족 화합과 통일의 대하를 찾아갈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난 20세기의 독립운동사이다.

지난 65년의 역사가 이룬 건국과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은 여기에 있었다.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또 다른 목표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반일투사만이 아니라 민족 근대화의 선구자였다. 조국 근대화와 민족독립에 대한 살신성인의 열정과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역동성을 독립운동가들은 견지하고 있었다. 그 열정과 역동성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독립운동은 어느 계열이나 계층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각계각층의 민족대중이 다양한 이념과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때문에 독립운동의 지향은 항상 민족세력의 통합과 통일이었다. 초기 임시정부의 통합, 독립운동 세력 통일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개최,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결성, 그리고 독립운동정당 통일운동과 후기 임시정부의 좌우통합 등 줄기차게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세력의 통합과 통일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작금의 민족분단 상황에서 새로운 민족발전의 역사를 열어갈 좌표는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민족세력의 통합과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좌우통일전선을 이루었던 고귀한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

더욱이 오늘의 국내외 상황은 다시금 우리에게 독립정신의 발흥을 촉구하는 것 같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의연하게 침략사를 미화(美化)하면서 러일전쟁 중에 불법 강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대일본제국' 재건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발해 등 우리 민족사의 한 주류를 그들의 변방사에 편입시키며 '신 중화주의'의 꿈을 드러내놓고 실현해 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다시 독립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살신성인의 자기 희생정신과 민족화합의 정신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그래야만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을 이루어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소원 하던 높은 '문화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천황제 코드와 일본

## -‘천황제 코드’(논형, 2009)를 중심으로-

조용래<sup>1)</sup>

### 1. 천황天皇 vs 일왕日王

한국 신문에서는 천황天皇을 흔히 ‘일왕日王’이라고 쓴다. 한국 매스미디어들의 보도 표기 관행에서는 오랫동안 천황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천황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황(皇)’자에 대한 거부반응인 듯하다. 입헌군주국의 왕이면 그냥 왕이지 황제가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칭 황제라고 하지만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등과 같이 일본 천황도 그저 ‘일왕’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천황을 그렇게 바로 부르는 법은 없다. 학술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언론매체들은 공식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천황폐하’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윗사람을 부를 때 예컨대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등과 같이 ‘님’자를 붙여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님’자를 빼고 그냥 선생, 사장, 부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황폐하’라는 호칭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그만큼 천황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은 극존칭이 일방적이다. 그것은 마치 초월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 같은 태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단지 천황이라고 칭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입장에서는 결례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한국 미디어매체 대부분은 천황 표기를 여전히 일왕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디어의 용어표기에도 과거의 양금이 뿌리내려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1998년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미래의 동반자임을 선언하고 상호 문화교류 및 개방을 결의한 ‘21세기 한·일 신선언’을 계기로 정부의 공식 표기는 ‘일왕’에서 ‘천황’으로 바뀌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교의 전 차원에서 ‘일왕’이 아니라 ‘천황’을 공식 호칭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호칭은 부르는 쪽의 의도를 담기 마련이지만 호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상의 실체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호칭을 달리할 경우 부르는 쪽이 달라진 호칭 때문에 원래의 호칭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나 역할, 또는 그 실체를 소홀히 인식하기 쉽다는 점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일본의 천황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나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등이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역사적 의미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 국민일보 논설위원. 일본 게이오慶應義塾대학 경제학박사. 한국일본학회 산하 일본정경사회학회 회장. 일본국제교류기금 초청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역임. jubilee21@dreamwiz.com ; blog.dreamwiz.com/jubilee21

공·저서로 ‘천황제 코드’(논형, 2009), ‘시장인가 정부인가’(부키, 2004), ‘都市と文明’(일본 미네르바서점, 1996), ‘자본주의사회를 보는 두 시각’(울곡, 1994) 등이 있다. 역서로는 오니시 히로시 大西廣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한양대출판부, 1999), 기다 켄이치 木田献一の ‘평화의 목시’(한국신학연구소, 1996) 등이 있다.

물론 ‘일왕’으로 표기하면서 천황이 담당해온 사회적·역사적 실체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본·일본인·일본사회 읽기는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왕’이라고 칭하는 순간 천황이 갖는 독특한 사회적·역사적 함의는 실종되기 쉽다. 사실 우리 사회의 일본 읽기는 무척 상투적(stereo type)이다. 과거사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일反日이 극도로 강조되고 있는 한편 첨단 제조기술을 비롯한 경제·경영·산업 측면에서는, 일본은 언제나 우리 사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마치 일본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일제日製는 선호하는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일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면가치적인 태도(ambivalence)가 ‘일본은 없다’는 논리와 ‘일본은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공존 가능하도록 했던 배경이다.

더구나 1990년대 들어와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탓에 제조기술 대국, 고고효율의 일본형 경영 등에 대한 찬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반일과 찬일讚日의 기묘한 밸런스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일본 읽기는 기존의 반일과 함께 일본 무시無視(Japan passing)의 태도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1998년 한·일 신선언’ 이후 양국의 문화적·인적 교류는 급격하게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본 인식은 피상적인 겉모습만을 관찰하는 수준에서 주저앉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말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이 늘어나고 일본의 한류 붐과 더불어 한국의 일본 마니아들이 늘어가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우리 사회의 일본 이해가 상투적인 모습을 못 벗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용어에서라도 달갑지는 않지만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천황’이란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 2. 천황제 ‘코드’와 ‘디코드’

무엇보다 천황·천황제·상징천황제가 차지하는 일본사회의 위상이나 역할은 마치 암호(code)처럼 겉으로 바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2009년 출판한 책의 제목으로 ‘천황제 코드’를 내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코드화(암호화)된 내용은 디코드(decode), 즉 암호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실체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천황을 ‘일왕’으로 호칭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관찰되고 있는 ‘왕’으로 일반화한다면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조차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마저 든다.

그럼에도 역시 문제의 핵심은 호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천황제 코드’의 실체이며 암호화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코드화된 천황제·상징천황제를 디코드 하는 데 뒀다. 아울러 디코드의 내용을 축으로 삼아 현대 일본사회를 들여다보자는 것은 이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천황·천황제와 상징천황·상징천황제는 법적인 근거로 따진다면 전자는 메이지유신 이후 마련된 구 일본제국헌법에 입각한 것이며, 후자는 패전 이후 등장한 일본국헌법에 따른 명칭이다. 구 제국헌법 상의 천황은 입헌군주로서 절대국가의 최고지존이었던 반면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상징천황은 전후 일본 민주정民主政의 심볼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에 대해서는 굳이 ‘천황제 코드’를 운위할 필요가 없으며 ‘천황제 코드’는 주로 후자인 상징천황을 대상으로 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도 전전의 국가신도와 같은 천황의 신성화 문제를 내포하면서 코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코드의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천황과 상징천황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법리적 규정일 뿐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천황에 대해 지칭할 때 ‘상징’이란 수식어를 붙여 ‘상징천황’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천황제와 상징천황제는 마치 단절된 듯 보이면서도 연속적이며, 역할에 있어서도 그 실체가 코드화 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천황제 코드’를 거론하려고 하는 첫 번째 배경이다. ‘천황제 코드’에서 제기하는 천황제는 전전의 천황제와 상징천황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천황제 코드’가 거론하려는 두 번째 배경은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제이다. 한·일 관계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던 일본의 역사왜곡, 지지부진한 과거사 반성,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기를 쓰고 벌이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 등도 문제의 뿌리는 천황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전전戰前부터 지금까지 일본 주류사회에서 차별 받아온 오키나와, 피차별천민인 부라쿠민部落民, 아이누 등이 처한 문제의 본질도 역시 천황제를 정점으로 한 일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천황제 코드를 풀어내는 작업은 결국 일본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다.

‘천황제 코드’의 세 번째 배경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수상(The Prime Minister)은 공식명칭이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다. 또 내각의 각 부처장관을 칭하는 공식명칭은 ‘OO대신大臣(The Minister of ~)’이기도 하다. 일본이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지만 민주정民主政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전근대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대신’이란 직함은 어울리지 않는다. 현행 일본국헌법상 상징에 불과한 천황에 충성하는 총리대신, 내각 각 부대신들의 존재는 일본 민주주의가 거대한 암호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이렇듯 일본의 천황제·상징천황제는 과거의 유물이자 동시에 현대 일본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코드 중 하나이다. 천황제는 패전 후 등장한 일본국헌법에 따라 그 위상이 상징천황제로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일본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존재이다. 오늘날 상징천황제는 지배기구로서 직접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각종 사회시스템의 이면에 면면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는 막연하고 분명치 않지만 천황제·상징천황제는 일본인들의 심리적·심정적 계급구조 인식을 유도하고 작동시키는 무형의 압력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천황제를 축으로 한 일본사회 엿보기는 현대 일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3. 일본 · 일본인 · 일본사회

일본에서는 온갖 서류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M, T, S, H(이하 MTSH) 등의 영문자를 마주치게 된다. MTSH 옆에 괄호가 있거나 점 두 개가 간격을 두고 찍혀 있어 무엇인가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처음 보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도 그렇고 관공서에서 뭔가 서류를 신청할 때도 예외가 아니다.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의 경우도 그렇고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표 1]. 일본의 축일과 천황제

\*2005년 5월 20일 공포된 일본의 ‘개정 축일법(祝日法)’에 의함.

축일명	날자	천황 관련 유무	비고
원단(元旦)	1월 1일	○	천황가 제사
성인의 날	1월 둘째 월요일		
건국기념일	2월 11일	○	천황가 신화
춘분의 날	춘분일	○	천황가 제사
녹색의 날	4월 29일	○	2007년부터, ‘쇼와의 날’로 개칭 시행. 쇼와천황 생일
헌법기념일	5월 3일		
국민의 휴일1	5월 4일		2007년 시행. 명칭도 ‘녹색의 날’로 개칭
어린이 날	5월 5일		
바다의 날	7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국민의 휴일2	경로의 날과 춘분의 날 사이에 낀 날		
추분의 날	추분일	○	천황가 제사
체육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문화의 날	11월 3일	○	메이지천황 생일
근로감사의 날	11월 23일	○	천황가 제사
천황생일	12월 23일	○	헤이세이천황 생일

이쯤 되면 MTSH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사실 MTSH는 그리 신기한 것이 아니다. MTSH는 메이지(Meiji·明治)–다이쇼(Taisho·大

正)-쇼와(Showa昭和)-헤이세이(Heisei平成)로 이어지는 연호의 영문 두음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M은 메이지천황 시대(1868~1912<sup>2)</sup>), T는 다이쇼천황 시대(1912~1926), S는 쇼와천황 시대(1926~1989), H는 헤이세이천황 시대(1989~현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사회가 천황의 연호에 입각해 때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는가.

일본의 축일 총 16일 중, 천황 내지 천황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것은 8일이나 된다. 반면 최근 들어 축일을 가능한 한 연휴로 엮어서 국민의 휴식 시간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국민의 휴일이 2일, 성인의 날, 헌법기념일, 어린이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 6일이다.

천황과 천황제가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시간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그리고 생활과 밀착하여 공휴일의 실질적이고 주된 근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것은 일정한 형식을 띠거나 확실한 근거를 내세워 주장하기보다 마치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처럼 일본사회와 일본인들을 소리 없이 포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 4. 천황제와 상징천황제 : 평화헌법의 아이러니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일본인이 바로 천황 일가이다. 법적으로 보자면 천황가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만들어진 것으로 ‘전쟁 포기와 교전권(군대) 보유불가’(헌법 제9조)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헌법이란 별명을 갖고 있지만 헌법 제1조 내용만큼은 기묘하기 짝이 없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구절의 애매모호함이 그렇고, 그 지위가 ‘국민의 전체적인 뜻(總意·총의)’에 따라 결정되었노라고 밝히는 대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총의’라고 돼 있으나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헌법 내용을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가 펼쳐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면 천황의 지위는 구름 위에 다시 구름을 얹은 모양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천황(상징천황제)은 헌법적 권위를 가지고 분명한 역할을 맡는다. 현재 천황은 국가원수로서 외국 국빈을 영접하기도 하고, 새로 선출된 내각 총리대신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헌법 제6조). 한편 천황은 일본을 상징하는 지위로 자리매김 돼 있는 탓에 현실정치와는 무관한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2) 일본의 연호체계는 메이지시대에 들어와 ‘1천황 1연호 제도(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뿌리내려 천황의 죽음과 더불어 당대 사용되던 연호는 후대 천황의 연호로 바로 교체되었으며 바뀐 연호는 즉위한 천황이 죽음으로 물러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선대 천황과 그 뒤를 잇는 후대 천황의 재위연도는 중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연호구분 상으로는 후대 천황의 연호를 우선한다. 예컨대 메이지천황은 1912년(메이지 45년) 7월 29일 숨을 거뒀다. 엄밀히 따지자면 1912년 7월 29일까지는 메이지 45년인 셈이지만 1912년에 대한 공식 명칭은 다이쇼 원년(元年)이다. 메이지천황의 죽음과 동시에 다이쇼천황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서도 천황가 사람들은 예외적인 존재가 돼 있는 것이다.

‘상징’과 ‘실체(현실)’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기묘한 구도는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직후 기능성을 중시한 연합국의 대일본정책과 어떻게 든 천황제를 계속 유지·보전하려는 천황의 신하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것이다. 연합국측은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는 천황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본의 전후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랐고, 천황의 신하들은 천황의 지배구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어떤 고육책이라도 만들어 내야 할 사명감에 분주했다.

그 와중에 천황은 슬그머니 전쟁범죄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중심(Kokutai·国体=국체<sup>3)</sup>)인 천황은 ‘실체’가 아닌 ‘상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자리 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를 ‘상징’으로 포장해야 했던 까닭에 천황제의 유지·보존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실체’를 강조하면 일본이 그 동안 벌여온 전쟁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상징’만을 강조하자면 과거의 전쟁에서 천황은 일본제국주의 지배구조에서 단지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그 이전 일본사회에 만연했던 국체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도 했다.

자기부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천황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새로운 천황의 이미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이미지 조작이다. 일본사학자 에구치 케이이치江口圭一(1932~2003)는 천황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조작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sup>4)</sup>. 첫째로 쇼와(히로히토)천황과 태평양전쟁을 포함한 15년 전쟁과 관련하여 “개전開戰은 천황의 의지에 반한 것이었지만 종전은 천황의 성스러운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이미지, 둘째로는 천황의 성품에 대한 것으로 천황은 전쟁과는 무관하며 ‘자애로운 아버지를 연상하게 하는 성품의 소유자’요 ‘평화의 사도’라는 식의 이미지이다.

요약하자면 천황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격자였지만 군부의 압력을 피할 수 없어야 할 수 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러나 마침내 군부에 대항해 영단을 내려 전쟁을 끝

3) 전전의 천황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 일본을 뜻했다. 공문서를 비롯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강요된 당시 일본사회의 시대적 키워드는 ‘국체호지國體護持’였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목적은 ‘국체호지’에 있으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천황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적에게 항복하기보다 자결하는 것을 옥쇄玉碎라고 칭송, 권장했으며 그 이유는 옥쇄가 천황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천황이 곧 국가인 천황제가 바로 ‘고쿠타이(国体·국체, Kokutai)’의 본 뜻이다.

4) 에구치 교수가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1913~2001)의 저서(『天皇の戦争責任』, 岩波同時代ライブラリー, 1991)의 ‘권말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에구치는 쇼와천황 사후(1989년 1월 7일) 일본 매스컴들의 보도행태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그동안 천황제 보존·유지를 강조해온 그룹의 이미지조작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노우에는 태평양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1931년부터 시작된 중국침략전쟁조차도 쇼와천황의 주체적인 재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4장 ‘천황 히로히토와 중국침략전쟁’).

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일본국민의 고통을 아파하는 군주였기에 그를 일본의 상징으로 자리 매겨도 부족함이 없다는 논리가 전후 일본을 지배해왔고, 알듯 모를 듯한 ‘국민의 총의’를 앞세워 천황은 역사의 어두운 ‘실체’에서 전후의 화려한 ‘상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된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실체’가 화려한 ‘상징’으로 재현되는 과정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단계적 계기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천황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스스로 영단을 내려 종전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먼저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방지한 잘못을 국민 앞에 시인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단계일 것이다. 천황이 ‘실체’에서 ‘상징’으로 물러나게 된 이유가 일본국민에 대한 천황의 개전 방지 책임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실체’를 ‘상징’으로 풀어내는 기묘한 해법이 그나마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패전 이후 지금까지 천황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다.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운운하면서 ‘상징’으로 물러났을 것이라는 구도 또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후 천황의 전쟁책임이 엄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상징’이라든가 ‘평화의 사도’라든가 천황에 대한 그 어떠한 화려한 수사修辭도 전진 천황·천황제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일본의 형식주의 사이에서 일본국 헌법은 탄생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유민주주의화를 목표로 삼았던 미국의 실용주의는 천황제의 온존에 무게 중심을 두는 일본 보수지배계층의 형식주의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sup>5)</sup>. 이는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천황이라는 흑을 달아맨 채 움직이는 기묘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일본사회의 여러 모순적인 현실을 잉태하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일본의 전후처리가 천황·천황제를 상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앞세워 온존시켰고, 나아가 미국은 일본국 헌법이 제자리를 찾기도 전에 다시금 현실론에 입각해 평화헌법(일본국 헌법)의 금과옥조라고 할 수 있는 ‘제9조’를 무의미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데 열중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보수 세력은 천황을 평화의 화신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비증강에 몰두하게 되었다.

평화헌법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그 이후의 여파에 대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전진의 천황·천황제는 면죄부를 얻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고 오늘

---

5) 천황의 지위가 메이지헌법과 신헌법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천황·천황제가 유지된다는 뜻에서 ‘형식주의’로 표현했다. 형식주의의 배경에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체(천황·천황제)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横田耕一, 『憲法と天皇制』, 岩波書店, 1990, pp. 4~5). 천황을 앞세운 일본 보수 세력의 형식주의는 앞의 와타나베 교수가 지적하는 의도로 전후 지배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에 이르렀다. 전전 메이지헌법 체계의 천황의 위상과 전후 평화헌법에 입각한 상징 천황의 위상은 분명 다른 것이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이 둘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예컨대 1989년 히로히토가 병사하자 일본 주요 신문들은 호의를 발행하고 ‘재위 기간(1926~1989)은 62년에 이르렀다’고 썼다. 분명히 전전과 전후의 천황 위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황의 존재를 단절정보다는 연속성으로 인정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미국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작은 빌미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키워온 것은 일본의 보수 지배세력이었다. 일본의 전후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5. 천황제는 역사왜곡의 뿌리

[일본형 무책임구조]

일본역사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고대부터 현재의 아키히토천황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천황의 존재다. 물론 3세기 이전의 천황은 설화에 불과하다지만 인류역사 중 이처럼 한 왕가가 천 수 백년 존속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본의 천황제 맹신자들은 ‘만세일계의 천황’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모양이나 이는 그야말로 역사왜곡의 극치다. 사실 11세기 이후 천황은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신정권은 왜 천황을 존속 시켰나?” 하는 의문이 역사학계에 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일본사의 일곱 가지 수수께끼’, 講談社, 1996).

메이지유신(1868)으로 왕정복고가 이뤄지기 전 700년 가까이 일본의 권력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바쿠후(幕府·막부) 등의 무신정권에 의해 주도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천황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전근대 사회의 권력이동은 역성혁명을 동반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수수께끼는 ‘권력과 권위의 분리’로 설명되고 있다. 즉 무력으로 권력을 쥔 무사그룹은 백성들에게 각인 된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민중통치를 정당화했으며, 거꾸로 천황은 무사그룹의 권력을 용인함으로써 멸문의 화를 면했다는 것이다.

기막힌 조화처럼 보이는 이 권력과 권위의 분리구조는 그러나 통치주체의 책임소재를 매우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바쿠후는 천황의 권위를 빌어 민중통치를 꾀했기에 혹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정책실패 책임을 천황의 몫으로 전가시킬 수 있었으며, 또 천황 역시 그 정책실패는 도용된 자신의 권위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잘못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구조가 일본역사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무책임구조는 대외적으로도 작용한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아시아에 대해서도 무책임구조로 일관했다. 왕정복고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한 천황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천황의 군대와 천황의 정부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과 살육殺戮에 대해 여태 그 어떠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반성도 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 무책임구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던 사실조차 부인하는 역사왜곡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무책임구조가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적 압력이나 항의 정도로 해결될 리 없다. 우리의 일본 연구를 더욱 강화하면서 역사왜곡의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일본사회의 무책임구조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는 일본 내의 양심세력을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국민일보 칼럼 ‘한마당’ 2001년 4월 9일자)

## 6. 천황숭배의 현장, 야스쿠니

[영혼을 가뒀두는 야스쿠니 합사6)]

“야스쿠니에 영혼은 잠들더라도 때때로 돌아가렴, 어머니의 꿈길로.”

일본 NHK가 선정해온 국민가요 중 ‘야스쿠니노(ヤスクニノ)’라는 노래의 노랫말이다. 오에 히후미大江一二三라는 군인이 쓴 시에 작곡가 노부토기 키요시信時潔가 곡을 붙였다. 오에는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중군 장교로 한 견습사관의 죽음을 기리며 이 시를 썼다.

오에의 아들이자 야스쿠니 문제의 권위자인 오에 시노부 교수는 저서 ‘야스쿠니 신사(1983)’ 말미에 노랫말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7). 전사한 견습사관의 피 묻은 군복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어머니 사진 뒤에 ‘어머니’란 단어가 24번이나 쓰여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토록 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살아서는 고사하고 영혼조차 어머니에게 갈 수 없었다. 전사한 영혼은 야스쿠니로 가야했기 때문이다.

오에 교수는 전사자 영혼조차도 유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비참한 현실을 노래한 아버지의 시를 계기로 야스쿠니문제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국가가 전사자 영혼을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서 독점함으로써 그 ‘신’들을 향한 신앙을 통해 무엇을 실현해 왔는가, 또 실현하기를 기대 해왔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곳, 야스쿠니. 영혼을 가뒀두고 그들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 전쟁과 침략을 미화하고 유족의 슬픔을 억지 기쁨으로 바꿔주겠노라는 야스쿠니. 그곳엔 억지 합사를

6) 기획특집 ‘일본관 지하드(聖戰성전), 야스쿠니신사’ 중에서, 국민일보 2006년 8월 14일자.

7) 大江志乃夫, 『靖国神社』, 岩波新書, 1984, pp. 187~189(오에 시노부, “야스쿠니신사”, 양현혜·이규태 옮김, 소화신서, 2001, pp. 200~203).

당한 채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대만인 영혼이 4만여 명이나 있다.

전전 일본의 국가신도는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와 야스쿠니신사를 축으로 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 신앙이란 국가신도의 두 축 중 하나를 숭배하는 것이며 동시에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지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찬미, 수용하는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장되면서 야스쿠니신사 신앙은 일본제국주의를 지탱하는 골간이 되었고 마침내는 국가신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문에 패전 후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연합군의 태도도 각별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1945년 10월 ‘정치적, 사회적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 제거’라는 각서를 통해 패전 일본의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고 치안유지법, 종교단체법 등의 탄압통제법규를 철폐하고 천황, 국체, 일본제국 정부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지시했다. 이어 그해 12월 25일 GHQ는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보 폐지에 관한 건’이라는 각서를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GHQ의 ‘신도지령神道指令’이다. 신도지령은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신도신사의 완전한 분리’ ‘신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국가로부터 분리’ 등을 명한 것이다.

그러나 GHQ는 국가신도의 해체를 명했을 뿐 당시 전국 11만여 개의 신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통적 신앙에 입각한 종교시설로 보았다. 여기에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따지지 않기로 한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GHQ의 입장 정리와도 관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군국주의·초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야스쿠니신사, 이세신궁조차도 강제폐쇄를 면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신도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아왔던 내무성 신기원神祇院이 행한 패전 직후 국가신도 보호를 위한 변명도 작용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GHQ의 애매모호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전몰자를 위로하는 행위로 치장한 채 침략사의 부정과 미화, 나아가서는 천황숭배를 고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겉으로만 보면 국가신도는 메이지유신과 함께 뿌리내리기 시작해 1945년 8월 패전으로 해체되었지만 국가신도의 한 축을 이뤘던 야스쿠니신사는 이처럼 건재하다. 이는 전전 천황을 앞세워 국가신도를 창건하고 추종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국민을 국체=천황 이데올로기로 묶어내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해왔던 일본 보수지배층이 전후에도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쇼와 천황 戰犯 합사 반대의 진실]<sup>8)</sup>

지난달[2006년 7월]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쇼와 천황(제위 1925~1989)이 A급 전범의 야스쿠니신사 합사(合祀)에 불쾌감을 나

8) 기획특집 ‘일본판 지하드(성전聖戰), 야스쿠니신사’ 중에서, 국민일보 2006년 8월 14일자.

타냈다”는 도미타 아사히코 전 궁내청 장관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1988년 암 투병 중이던 쇼와 천황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쇼와 천황의 참배 중단 이유를 기록한 첫 문서다.

◇메모 공개 배경=보도에 따르면 닛케이는 지난해[2005년] 가을 도미타 전 장관 부인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 그런데 왜 지금 공개됐을까. 닛케이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천황 참배중단이 A급 전범 합사 때문이었고, 지금 주변국 반발도 바로 그 점에 있음을 여론에 환기시킴으로써 총리의 참배중단을 유도해 주변국과 관계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A급 전범 분사(分祀)론에 불을 지피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거듭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강행으로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재계를 비롯해 나카소네 전 총리, 와타나베 요미우리신문 회장 등 수많은 보수계 인사들까지도 총리의 참배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메모의 진실=왜 천황은 A급 전범 합사를 못마땅해 했을까. 천황이 자신의 총복들에 대해 아무리 전범으로 규정됐다고 해도 참배를 기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면, 합사로 인해 야스쿠니가 국제적으로 조명 받는 것을 꺼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천황 자신이 참배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행여 일반 참배 자체조차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결과적으로 야스쿠니에 대한 반감 확산을 염려했을 수도 있다.

1985년 8·15 참배로 한국·중국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져 이후 참배를 중지한 나카소네 전 총리는 최근 한 좌담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강행 방침을 비판하면서 “천황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의 참배로 야스쿠니가 국제 문제화되고 이 때문에 당연히 참배하러 와야 할 천황이 참배할 수 없다면 잘못 아니냐는 주장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 주장은 야스쿠니의 성전 이데올로기를 용인하는 발언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의 실질적인 서포터즈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유족회의 고가 마코토 회장도 최근 더 이상 야스쿠니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A급 전범 분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분사가 이뤄져도 야스쿠니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사 이후 천황의 참배(親拜·친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야스쿠니의 성전 이데올로기는 되레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7. 천황제 지배구조의 저변, 부락쿠민

일본사회 일반과 섞이지 못하고 배제되고 차별당해 온 존재가 바로 피차별천민被差別賤民, 이른바 부락쿠민(部落民·부락민)이다. 보통 부락쿠部落라고 하면 주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거나 가죽을 벗겨 가공하는 일을 주로 맡아

은 ‘에타(穢多·에다)’와 죽은 시신을 처리해온 ‘히닌非人’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근대사회에서 불가촉천민은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촉천민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지배층의 위상을 부각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피지배계층의 순종적 태도를 유도해 지배체제를 굳건히 하는 상징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역할은 성스러운 것과 천한 것의 극명한 대립을 통해 지배층의 위대함을 강조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다. 귀천貴賤이 상존할 때 귀한 것은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이와 더불어 천한 것을 대표하는 계가레와 달리 고귀한 것은 ‘깨끗한 것’과도 연계된다. 깨끗한 것(정淨=청淸, 기요메淸め)과 더러운 것(부정不淨=예穢, 계가레)의 대립공존을 통해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마땅히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른바 지배의 당위성이 확보되고 지배체제의 권위는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귀천의 문제가 ‘정·부정론淨不淨論’=‘청예론淸穢論’으로 확산되면서 지배체제는 더욱 튼튼해지는 셈이다. 그 와중에 지배권력은 피지배자들에게 귀·천=정·부정의 어느 한 편을 지지하도록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고 그 결과 불가촉천민에 대한 피지배자 일반의 차별의식을 종용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 이른다.

두 번째의 경우는 피지배층이 불가촉천민을 통해 느끼는 상대적 안도감을 자극해 지배체제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불가촉천민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보면서 피지배계층은 아무리 국가의 부역이 많고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불가촉천민의 처지보다는 낫다”는 인식 속에서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배에 대한 피지배자의 순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경우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재해의 원인이 백성 자신들의 계가레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면서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계가레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지배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틀로서의 불가촉천민은 전근대사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차별의 본질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근대사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데 있다. 부라쿠가 그렇고 오키나와, 아이누, 재일한국·조선인 문제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우린 천민이나 조선인은 아니잖아(でも俺らは非人、鮮人じゃねえぜ)”라는 의식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전후 천황제가 상징천황제로 바뀌고 전전의 천황제 지배구조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일본사회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사상이 뿌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부라쿠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천황제에서 비롯된 차별구도가 여전히 일본인의 심정적

9) 사실 고귀한(성스러운) 것과 천한(더러운) 것은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흡사하다. 일본어사전 ‘고지엔広辞苑’에 따르면 ‘하후리(祝)’와 ‘하부리(葬り=屠り)’는 비슷한 발음이지만 뜻은 사뭇 다르다. ‘하후리(祝)’는 신을 섬기는 일의 총칭이자 그 일을 맡아 하는 자를 뜻하고, ‘하부리(葬り=屠り)’는 매장 또는 도살이란 말이다. 한쪽은 고결하고 성스러운 것을, 다른 한쪽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계급의식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정적 계급구조는 바로 핏줄과 혈연의식 중시, 이른바 과거 ‘천황제 가족국가’에서 영향을 받은 일본인들의 ‘이에家 중심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핏줄이라는 의식이 부라쿠문제의 심연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실체는 대단히 허망한 것이다. 이는 만세일계의 천황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버지의 핏줄, 정확하게는 아버지 DNA의 1/2을 물려받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1/4, 증손자는 1/8, 고손자는 1/16, 5대손은 1/32... 식으로 멀어지는 것이 핏줄이다. 10대손에게 10대조 할아버지의 DNA는 겨우 0.09%(1/1024=1/2의 10승乘)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천황이 125대라고 강조하면서 만세일계 운운하지만 125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진무神武 천황과 지금의 아키히토明仁 천황과의 관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1/2의 125승乘).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연의식에 입각한 천황제, 부라쿠차별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8. 일본판 성가족과 존황애국의 부활

천황가의 가족행사가 있는 날은 이른바 성가족聖家族(The Holy Family)으로 칭장된 천황가족사진이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때이다. 단란한 가족은 이런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충만하다. 핵가족, 이혼, 편모·편부 가정, 독신가정, 독거노인 등이 날로 늘어나는 지금 천황가의 단란함은 국민의 경외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천황가를 축으로 한 천황제가족국가의 위상을 마음껏 뽐내는 의례의 시간이기도 하다.

성가족은 원래 가톨릭교회에서 어린 예수,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정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화가들이 성가족을 묘사했다. 근세에 들어와 성가족 묘사가 종교적인 거룩함보다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쪽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성가족묘사의 의도하는 바는 일반 성도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가족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성가족을 마음에 담고 일상을 견디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성가족이 묘사하는 완벽하고 거룩한 관계는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당장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성가족의 형상에서 힘과 위안을 얻고 용기백배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밋치 붐(1958)’과 ‘마사코 붐(1993)’, 그리고 잣은 천황가의 가족행사 모습은 천황·천황가·천황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지만 한편으론 친근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본판 성가족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성가족에 대해 문제제기를 것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였다. 물론 그들이 거론하는 성가족은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예수의 가족’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 속하는 “성가족(Die holige Familie, 1844)”에서 거론하는 성가족은 당시 사변적 관념론을 구사하는 ‘청년 헤겔파(헤겔 좌파)’를 말했다. 당시 빈곤에

허덕이던 노동자계급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관념론에 매몰된 헤겔 좌파가 아무리 진보적인 사고를 거듭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이를, 즉 성가족이 주장하는 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강조했다<sup>10)</sup>. 유사類似 성가족의 신성성을 뛰어넘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발상은 지금 일본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유사 성가족 천황가의 존재를 더욱 고조시키려는 일련의 작업들이 전후 60여 년 동안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1967년 부활한 ‘건국기념일’이었다. 건국기념일은 전전에는 ‘기원절紀元節’로 불렸으며 자칭 만세일계 천황가의 첫 천황인 진무神武 천황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천황제가족국가의 탄생신화를 자리 매김하는 축일이었던 셈이다. 기원절은 메이지시대(1873년)에 2월 11일로 정해졌으며, 구 일본제국헌법이 1891년 같은 날 발표되어 일본제국헌법기념일이기도 했다. 패전 직후 기원절은 새로운 일본국헌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해 1948년 공휴일·기념일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던 기원절이 슬그머니 ‘건국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또 패전 직후 법적으로 폐지되었던 원호제도元号制度<sup>11)</sup>가 1979년 ‘원호법元号法’으로 법적인 부활을 이루었다. 물론 법적으로 원호 사용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공서를 중심으로 공문서에 원호 표기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호제도의 법적인 부활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원호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에게도 사용이 강요되고 있다.

일본국민이 ‘밋치 붐’이라는 유사 성가족의 이벤트에 취해있는 사이 어느 사이엔가 천황제와 연관되었던 여러 기재들이 모습을 갖춰갔다. 패전 직후 일본국헌법의 축을 이뤘던 평화·민주주의에 입각해 배제되었던 전전의 낡은 유물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히노마루日の丸·기미가요君が代(1999년), 애국심교육이 거론되고 일본국헌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유사 성가족 천황가를 앞세운 일본 보수층의 노리는 바였다.

일본관 성가족의 배경을 이루는 전후 일본의 보수층은 수면 아래로 잠겨 있던 천황제가족국가의 소도구들을 하나씩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수단으로 동원했다. 교육개혁의 본질은 애국심 함양에 있었다. 애국심을 앞세워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가 있을 정도이고 보면 21세기 초 일본사회의 움직임은 마치 도쿠가와바쿠후 말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부르짖으며 수 백 년 전 무대 저편으로 사라졌던 천황의 복권을 이루어내는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바쿠후 말 아편전쟁(1840~1842)을 비롯하여 흑선黒船의 도래(1853)에 이르기까지 강성한 서양세력의 접근 속에서 위협을 느낀 지배계층은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10) 良知力, 『ヘーゲル左派と初期マルクス(헤겔좌파와 초기 마르크스)』, 岩波書店, 2001 참조.

11) 일본에서는 연호年號를 원호元号라고 부른다.

차원에서 양이를 설파하기 시작했고, 쇠락하고 있던 도쿠가와바쿠후에 개혁정책을 요구하는 압력차원에서 거론된 존왕론에 열광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인 바로 존왕양이었다.

한 번 불기 시작한 존왕(존황)론은 아예 더 이상 도쿠가와바쿠후에 난국을 맡기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마침내 이 흐름은 바쿠후 타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바쿠후는 이미 서양 각 나라에 개국을 선포한 상황이었기에 도쿠가와와 뒤를 이어 등장한 메이지유신정부는 존왕양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존왕은 계속 추구하되, 양이는 열강들이 포진하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메이지정부는 갓 탄생한 일본제국의 존립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존왕의 기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쪽에 힘을 쏟았다. 천황의 절대적 권위를 앞세우는 가부장적 천황제가족국가는 그렇게 등장했고, 존왕양이는 이제 존왕애국으로 탈바꿈했다<sup>12)</sup>. ‘양이’의 자리에 ‘애국’이 끼어들어간 모양새이다.

## 9. 반천황제 시민운동 : 기대와 전망

### [4無의 시민운동]

일본의 사회학자 히다카 로쿠로는 1960년대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 시민운동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즉 무당무파(無黨無派), 정치적 야심 없음, 전업활동가 없음, 상부의 지시 없는 횡적 연대관계 등이다. 이른바 ‘4무(無)’다.

‘4무’는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당파성을 배제하고 정치지향성을 경계한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치적 야심을 배제하면서 이를 위해 시민운동만을 꾀하는 전업활동가를 두지 않고 각각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 파트타임 활동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역사왜곡 검정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선봉에 섰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의 경우도 그렇다. 그의 열정적인 활약상은 우리 매스컴에도 여러 번 소개됐지만 그는 전업활동가가 아니었다. 그의 본업은 일본출판노조연합회의 사무직원. 지난 2001년 봄 정년을 2년 앞두고 회사를 그만뒀 지금은 전업활동가이긴 하지만.

또 ‘4무’를 통해 시민운동이 종적 연대관계를 배제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업활동가를 두지 않음으로써 운동참가자의 자발성을 높이고 필요한 비용도 참가자가 각각 나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부-대

12)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Tessa Morris-Suzuki), 『愛国心を考える(애국심을 생각한다)』, 伊藤茂訳, 岩波ブックレット, 2007, pp. 9~10. 모리스-스즈키는 메이지 초기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가 쓴 “尊王愛国論(1891)”을 인용하며 양이가 애국으로 치환되었다고 지적한다.

중, 본부-지부로 짜인 상명하달식 위계구조에 대한 거부는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 확실히 구분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시민운동이 완전히 탈정치화 노선만을 걸어왔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에는 시민운동단체들이 혁신 정당, 노조 등과 연대하여 개혁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일본 시민운동은 지금까지 '4무'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조직력이 미약하고 지역적인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 시민운동단체마다 정의와 공익을 앞세워 그 어떤 주제가 됐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참여자들의 끈질긴 열정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문제도 그랬고 환경문제, 지문날인 반대, 천황제 반대 등도 같은 맥락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

시민운동을 마치 정치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수단 내지 전 단계쯤으로 생각하는 듯한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는 생소한 이야기다. 물론 시민운동단체가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보면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일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정치세력화하고 당파성을 띠기 시작하면 시민운동단체는 혼란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기 쉽다.

시민운동단체에서 정치가가 속속 배출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4무'의 시민운동이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 의지를 세우고 소기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운동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운동은 채 꽃피우기도 전에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2002년]을 전후해서 시민운동단체가 부쩍 부각되고 있기에 해본 생각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한마당’ 2003년 1월 13일자)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본시민들의 평화헌법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 시민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앞 절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일부 시민운동단체를 제외하면 반전·평화·호헌과 반천황은 동일선상에 바로 논의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반전·평화·호헌의 궁극적인 내용은 반천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전·평화·호헌의 관심을 높여가는 것은 바로 일본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2006년 9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평화헌법 개정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다. 특히 헌법 9조에 대한 자민당의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본시민들 사이에서 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 절차에 필요한 '국민투표법'을 2007년 5월에 통과시켰고, 이후 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해 5월 3일(헌법기념일)에 맞추어 조사한 아사히신문의 앙케이트 조사<sup>13)</sup>에 따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8%인데 비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27%에 불과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배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9월 아베정권이 리더십 부재로 자신 사퇴하면서 헌법 개정문제는 다시 화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헌법기념일을 염두에 둔 아사히신문의 앙케이트 조사<sup>14)</sup>에서는 ‘개정 필요’가 56%로 줄어들었고 ‘개정 불필요’는 31%로 늘어났다. ‘헌법개정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52%, ‘장래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였다. 현재 이슈로 보는 의견이 훨씬 많을 정도로 헌법 개정 문제는 여전히 일본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이 곧 반전·평화의 기본 축이 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8% 중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고, 2008년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에 동의한 56% 중 37%만이 ‘9조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사회의 장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상징천황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상징되는 사실상의 천황제 옹호 분위기가 충만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반전·평화·호헌 운동이 휘둘리며 좌절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징천황제가 국민 대중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천황과 국민 모두가 과거의 전쟁책임 문제를 불문에 부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천황제 코드는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기대되는 일본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고령 시민들의 마지막 불꽃이다. 2008년 7월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2.0%로 세계에서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일본의 제1차 베이비부머인 1947~1949년 생들이 이미 6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단카이(団塊·단괴)세대<sup>15)</sup>라고 불리며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회사에 매여 분골쇄신하던 ‘회사인간’이라는 별칭으로도 통했지만 2007년부터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퇴직자들과는 조금 다른 행태, 즉 사회를 위한 볼런티어 활동에 눈뜨기 시작했다. 물론 은퇴 고령 시민들의 활동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단카이세대 그룹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 강화된 것은 글로벌 경쟁체제 만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생활운동으로서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대상을 일상문제로 점차 좁혀오면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

13) 아사히신문, 2007년 5월 3일자.

14) 아사히신문, 2008년 5월 3일자.

15) ‘단카이세대’는 말 그대로 1947~1949년 3년 동안 출생자가 몰려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약 700만 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일본의 전후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은 마지막 세대이며 고도성장의 주역이기도 했다.

서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일본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민운동 참여행태가 기대된다.

그렇다고 깊이 뿌리내려 있는 천황제 코드가 단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 시민사회가 금과옥조로 중시해온 반전·평화·호헌의 흐름이 이어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천황·상징천황제의 심리적 지배구조는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 비뚤어진 지배구조로 등장해 일본사회에 뿌리를 틀고 앉아 있는 천황제 코드는 일본사회의 성숙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도려내는 것은 이웃나라 비판자들의 몫이 아니라 일본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가야하는 과제이다. 여기에 은퇴 고령시민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다져진 경험에 입각해 자신들의 새로운 여생의 활동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충분히 기대되는 방향이다.

일본·일본인·일본사회의 문제는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아프도록 경험해왔던 것처럼 바로 한반도의 문제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결국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지극히 간단하다. 대범하고 차분하게 일본사회와 시민연대를 구축하고 이를 점차로 확대해 가는 일뿐이다. 일본의 본질, 숨어 있는 천황제 코드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는 일, 그것은 동아시아 연대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재일한국인과 일본사회

최영호 (영산대학교)

## 一. 재일한국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특강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집단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통사적(通史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전개되고 있는 재일한국인 정체성의 다양한 변화들을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재일한국인 사회의 변화에서 핵심 줄기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같다.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탈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양한 측면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부여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특강에서는 정치적 아이덴티티, 즉 민족주의(Nationalism)의 주체 혹은 객체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거나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더듬어 가는 형태로 하여 100여년에 이르는 재일한국인 사회와 일본 사회와의 관계사를 조망하는데 그치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민족의식은 자본주의 발달이나 근대성의 전개와 연동하여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또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민족의식의 표출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이 민족의식을 표출하는 대상 공간은 일본사회뿐 아니라 한반도와 제3의 국가가 되어 왔으나 오늘 특강에서는 주제에 맞추어 일본사회에 집중하고자 한다. 일본사회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재일한국인 1세와 2세에 관한 연구조사의 대부분은 그들이 종래의 한반도 국가(체)에 대한 민족의식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유형과 일본 사회와 국가에 동화해 가고 있는 유형으로 이분화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민족의식이 전반적으로 희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국가(체)와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반면에 일본사회에 대한 동화(同化)가 농밀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의 거주민으로서의 속성과 한반도 국가의 재외국민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다. 전자를 현실적 조건에 의한 속성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역사적 조건에 의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속성의 비중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변화의 기본 축을 역사적 조건에 의한 속성에 두고자 한다. 역사적 조건에서 볼 때 재일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국가의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경제적 학문적 목적 등을 위해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오래 동안 거주하게 된 한반도 출신자와 그의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재일한국인을 한반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혹은 국가체의 구성원, 즉

재외국민 혹은 재외국민체로 볼 경우, 이들의 민족성은 일본으로 건너간 목적이나 거주 기간 또는 국적이나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민족 구성원의 다양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기별로 중심이 되어 온 집단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대체로 한반도 국가와 관련한 정체성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형되었고 이들의 정체성이 일본사회에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보편적으로 어느 커뮤니티가 집단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데에는 한편으로 집단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외부의 다른 집단에 의해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다. 재일한국인 사회에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이 아우러져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재일한국인 개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으로는 다양하게 정당화 될 수 있겠지만, 재일한국인 사회의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측면이 보다 많았다고 보인다. 그것은 통사적으로 재일한국인 사회가 일본사회로부터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쉽사리 한반도에 융합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 二. 식민지 이전의 재일한국인 : 일본사회에 분산 매몰된 존재

식민지 이전에 일본에 건너간 한국인 가운데는 유학생이 많았으며 아직 한반도에서 일본을 이주 지역으로 생각할 만한 사회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재일한국인 사회라고 볼릴 만큼의 집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식민지 이전에 일본에 노동력으로 진출한 한국인에 관해서는 1994년에 고마츠(小松裕)가 엮은 단행본, 『韓國併合前の在日朝鮮人』(1994)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기존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식민지 병합 이전에는 대한제국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주 가능성 낮은’ 일본 진출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식민지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일본 각지에서 ‘정주 가능성 높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입과 취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메이지정부에 들어서 국내 외국인에 관한 통계가 나오면서 재일한국인에 관한 통계도 나오게 된다. 『일본제국통계연감』이 외국인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882년부터 1909년까지 재일한국인 인구를 살펴보면, 1882년에 4명이었던 것이 1909년에 79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메이지정부가 파악한 통계라는 의미가 있을 뿐, 실제로 각 지방 관청으로부터의 보고에 따른 대강의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시기 재일한국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 일본 각지에 흩어져 존재하던 한국인 노동자를 합치면 수천 명 단위의 숫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메이지정부는 1899년 칙령 제352호 「조약 또는 관행에 의해 거주자의 자유를 갖

지 않는 외국인의 거주 및 영업 등에 관한 건」을 공포 시행하여, 근대국민국가로서 비로소 국내 외국인에 관한 관리 법제를 마련했다. 이 칙령은 외국인 전반에 걸쳐 일본 국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편 노동자에 한하여 거주 이전과 노무 취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칙령이 제정된 배경에는 주로 중국(淸國) 노동자들의 일본 진출 움직임이 컸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의 일본 이주와 이민에 대한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칙령이 제정되었다. 반면에 메이지정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관행에 의해 거주와 취업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 자”로 간주하고 있었고, 따라서 칙령에서 규정하는 단속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화도조약 제5관(款)에 의하면 “조선국 인민은 조선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일본국에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조선 관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오로지 메이지정부의 관리 권한에 따라 일본 출입의 자유가 인정되든지 제한을 당하든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추밀원의 칙령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당시 일본 정치가들의 견해를 보면 한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자세는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선이나 대한제국 관청의 허가 없이 일본으로 들어간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본 입국에 그다지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일본 내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이나 구미 사람과는 달리 거주 가옥소유 영업 행위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조약은 국가간 불평등조약으로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이 일본에서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가지 못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선이 일본의 ‘준식민지’적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메이지정부가 한국인의 일본 거주 자유권을 규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식민지 병합 이전의 재일한국인은 개별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일본 각지에 흩어져 거주했으며 일본사회에서 한국인들만의 집단을 구성하기에는 미미한 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일본사회에 분산 매몰된 존재로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족, 즉 오늘날 재일한국인 커뮤니티의 원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식민지 시기 재일한국인 사회 형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존재로 보아 넘기기도 어렵다. 또한 ‘정주 가능성 높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는 있으나, 이들이 당시에 주관적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시기 일본정부나 관리들에 의하여 인식되는 객관적인 재일한국인은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체’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nationalism의 주체로 파악되지 않았고 다만 인종적으로 일본인과 구분되는 존재로서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인식되지도 않아 정치적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기 곤란한 존재로서, 이들의 개별적인 일본사회 정착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의 삶의 방식이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 三. 식민지 시기의 재일한국인 : 일본사회에 대한 민족적 대응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시작되고 집단적으로 한국인의 일본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와 함께 재일한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재일한국인들이 주관적으로나 개관적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역사학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집단 일본 이주를 부추긴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1) 식민지 시기 한반도 농촌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경작지 부족, (2) 토지조사사업이나 산미증식계획 등으로 인한 소작인들의 생활환경 불안, (3) 몰락 농민들의 대량 노동력을 흡수할 만한 한반도 내 노동시장의 부재 혹은 부족, (4)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의 입지 조건, (5) 비록 관리 통제가 수반되기는 했지만 갈수록 발달해 가는 한반도와 일본 간의 연결 교통수단, (6) 한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6) 일반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저임금 고효율 한국인 노동자의 환영 등이 그것이다.

식민지 시기 재일한국인 인구 통계로는 관련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내무성경보국(內務省警保局)의 통계가 있다. 이에 의하면 1911년 2,527명이었던 것이, 1917년에 14,502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1924년에는 118,152명으로 십만 명 단위에 돌입했고 1940년에는 1,190,444명으로 백만 명 단위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국세(國勢)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에서 보면 이 보다 약간 더 많은 숫자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20년 경보국 조사결과가 30,189명이었던 것이 비해 ‘국세조사’ 결과가 40,755명, 1930년에는 298,091명에 대해 419,009명, 1940년에는 1,190,444명에 대해 1,241,315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경보국의 조사결과 통계보다는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11년부터 1944년까지 매년 조사결과를 내놓은 경보국 통계를 중심으로, 식민통치 시기의 재일한국인 인구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전체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 1910년대 전반기 증가세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1910년대 후반기부터 1920년대 후반기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3) 1930년을 전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4) 193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 1939년 이후 1944년까지 5년간에 걸쳐 100만 명 이상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식민지 시기 재일한국인은 일본제국 신민으로서 일본인과 국적(nationality)을 동일하게 유지했으며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동일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일본 본토(內地) 바깥의 식민지 지역 출신자로서 일본인과는 다른 법적 지위에 놓였다. 즉 일본인이 ‘내지’에 본적을 두며 ‘호적법’의 적용을 받았던 것에 비해, 한국인은 조선에 본적을 두는 자로 ‘조선후적령’의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내지’와 식민지와 사이에는 혼인과 양자 입적 이외에는 지역간 본적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일본인과 식민지인 간의 차별 혹은 구별은 제도적으로 유지되었다. ‘일시동인’, ‘내선일체’ 등 식민지 동화를 위한 이념이나 슬로건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현실

적으로는 일본정부는 ‘내지’와 식민지 사이에 차별적인 법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재일한국인의 정치적 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일본신민이면서도 일본인과 차별적인 법적 위에 놓인 ‘왜곡된 형태의 국민’으로 인식되었다. 전쟁 말기 식민지와 일본 본토 사이에 제도적 통합이 진전된 것처럼 보인 것도 식민지 지역에 일본 본토에 버금가는 권리가 부여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일본 본토의 정치권 권리 상황이 식민지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일본사회에 대한 민족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일한국인들은 다양한 집단적 대응을 보였다. 각양각색의 대응을 포괄하여 여기서는 크게 ‘충성(loyalty)’과 ‘이의제기(voice)’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한다. ‘충성’의 대응으로는, 일본의 중앙 혹은 지방관청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1924년에 오사카(大阪)에서 결성된 「내선협화회(內鮮協和會)」를 필두로 하여 1920년대와 30년대에 일본 각지에 만들어진 협화회 단체들과 1940년대에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만들어진 「흥생회(興生會)」가 있다. 또한 일본의 중앙 혹은 지방관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1921년에 조직된 「상애회(相愛會)」와 1937년에 조직된 「오사카 계명회(大阪啓明會)」 등이 있다.

‘이의제기’의 대응으로는, 재일한국인 유학생들에 의한 1919년 2·8 독립선언과 같이 ‘국가체’ 독립을 전제로 하는 운동과 함께, 1920년대와 30년대에 일본의 노동 운동이나 대중운동과 연계되어 나타난 사회주의적 움직임 들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재일한국인의 사회적 대응은 전반적으로 날이 갈수록 구성원들의 정주 성향이 높아지면서 일본사회에 대한 동화가 진전되었고, ‘이의제기’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체’의 독립보다는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1937년 7월의 중일전쟁 반발과 함께 중국본토에서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제국은 병력과 산업노동력의 보충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인원에 대한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38년 2월의 칙령에 의한 「한국인 육군특별지원병제」를 비롯하여, 1943년 10월부터 「한국인학도특별지원병제」, 나아가 1944년 4월부터 「조선 징병령」을 실시하여 한국인을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투입시켰다. 즉 일본제국 신민으로서의 ‘충성’을 강요하고 제국전쟁에 동참하게 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인 징병자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그 실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나, 총독부의 보고 자료와 일본정부의 공개 자료에 의하면, 1944년 12월까지의 만20세의 입대 적령기 청년을 약 22만 명으로 보고 그 중의 절반을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이수자로서 우선적으로 징집하고, 그 나머지는 교육훈련을 시키고 나서 징집할 계획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또 다른 보고 자료인 「제 86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4년 5월까지 한국인 군용원(군무종사자)으로 총 88,241명이 조선으로부터 징집되었으며, 그 중에 일본에 배치된 자는 33,143명이었다고 되어 있다.

한편 1939년 7월 내무성과 후생성의 차관명의에 의한 통첩 「한국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에 의하여, ‘모집’ 방법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의 집단 이입이 시작되었으며, 태평양전쟁 중이던 1942년 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에 기초하여, 조선총독부의 「한국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이 만들어지고, ‘관알선’ 방식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의 일본이입이 단행되었다. 나아가 1944년에 들어서는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 등 2차례에 걸친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일반 징용’ 방식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의 대량 이입이 추진되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한국인 노무자 이입자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총 634,093명을 일본에 이입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의 공안당국통계에 의한 1944년 말의 재일한국인수 1,936,843명에 비추어 볼 때, 총독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미 1938년까지 이미 일본에 이주하여 어느 정도 정주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1939년 7월의 「국민징병령」에 의한 노동동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일한국인과 함께, 새로 전시 노동자로서 강제 이입되어 본거지로의 귀환만을 기대하고 있던 당시 뉴카머 한국인들이 함께 일본에서의 전시 동원 체제를 경험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 이후 한반도 내의 각 직장이나 집회소 교회 등에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붙이고, 한국인들에게도 이것을 제창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로 지정하여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귀축미영(鬼畜米英)을 토벌할 것” 등을 선서하게 하였으며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해방 직전에 한반도에는 73개소의 신사와 157명의 사제(司祭)가 존재했으며, 서울(京城)의 중앙신사에는 참배객이 1년에 190만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 정부는 한국인의 ‘충성’ 강제와 함께 그 대가로 한국인 관리의 임용 확대와 근무가봉 지급의 실시를 비롯하여, 한국인에 대한 일본 국민으로서의 대우 조짐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 전형적인 예가 국민학교 의무교육 정책과 참정권 부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초등교육이 의무화 된 것은 1886년(6년제로는 1906년)부터이지만, 조선에 있어서는 패전의 시기가 거의 다가온 시점에서 징병제 실시에 대한 무마책으로 초등교육의 의무제도 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조차 1946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까닭에, 패전으로 인해 덧없는 계획으로 끝났다. 참정권 부여 정책으로서는, 중의원 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법률안은 1944년 말에 입안되어 이듬해 1월의 정기의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내각 10명중 7명을 한국인에게 할당하게 되었고, 일본본토와 같이 국세를 15엔(円) 이상 납부하는 자에게는 한국인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되었다. 한반도를 전쟁물자의 공급기지로 하고 한국인을 전시동원 할 조건으로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위 ‘유사(類似) 국민화’를 기도했던 것이었으나, 이것도 조기의 패전과 함께 실행 없는 계획으로 끝났다.

한편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1920년대부터 황국신민화 하려는 동화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동화정책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사상, 감정, 언어, 문화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본인화 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국민대우의 전제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재일한국인에게는 이 동화정책이 일본국민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는 기능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전쟁 종결이 되어서도 지난날의 일본제국의 지배체제가 일본과 한반도의 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었던 이유로는, 태평양전쟁과 함께 양 지역에 걸쳐 동일한 전시동원체제가 전개되었다는 점과 한반도에서 수많은 잠정적 노동자들이 돈벌이나 징용의 형태로 일본의 건너갔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재일한국인의 정치적 대응에서 적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었으며 전쟁 말기에는 대다수의 강제이입 노동자들이 일본사회와 격리되어 한반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군주주의화 하는 일본제국의 지배체제와 일본사회에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표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소위 반체제운동가와 전쟁협력자들이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어 일본의 전쟁양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어 감에 따라, 한반도의 해방을 확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체제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다. 일찍이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다음날인 12월 9일에, 재일한국인 중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지목된 124명이 일본정부의 「비상조치」에 의해 검거된 것을 비롯하여, 「평안그룹」, 「민족부흥회」, 「계림동지회」, 「동맹회」, 「마르크스주의연구회」, 「독립혈맹」, 「조선독립청년당」, 「조선독립연맹」 등, 소수 한국인에 의한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으며, 그 밖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등의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까닭에 치안유지법 위반자로서 대거 검거되었다.

다만 이 시기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인들에 대한 동화와 단속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 반체제 운동가층에 있어서는 동포의 동원을 위한 기본설비가 전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체제 운동을 전개하기가 곤란했다는 것, 즉 반체제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전쟁종결에 임하는 자세는 일반사회에서 동떨어진 존재로서 옥중에서 출옥을 기다린다는지, 현실적으로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바꾸든지(전향하든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일본의 동화정책에 대해서 일본국민으로 대우받기 위해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교육에 나섰던 수많은 인사들이 존재한다. 해방 후 소위 「친일분자」로 불리게 된 인사들이다. 누구보다도 신분적으로 일본제국의 동화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던 계층에는, 왕족, 공족(公族) 그리고 귀족이 있었다. 해방의 시점에 있어서 생존해 있던 한국인 왕족과 공족은 1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와 동화 정책에 안주하는 가운데 아무런 결단도 없이 조국 해방을 맞았다.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앞두고 황족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왕족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전쟁말기 일본제국이 식민지인 치우개선 방침을 발표하자 재일한국인 유지 가운데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1945년 1월 홍생회 지방대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상되는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지하항공기 공장을 건설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지하공장건설 일심회」를 조직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재일한국인 유지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전쟁협력 사례가 되고 있다.

#### 四.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 : 민족의 각성과 일본사회로부터의 이반

조국의 해방과 함께 재일한국인들은 귀환의 움직임과 함께 단체 활동을 통하여 ‘해방민’으로서 새로 건설될 한반도 국가에 대한 강렬한 귀속의식을 내보이게 된다. 일제의 패전에 의해 한국인과 일본인들 간에는 피식민 민족의 해방이라는 현실 인식과 식민통치 민족의 종언이라는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전시동원체제의 속박으로부터 풀려 나왔다는 공통된 현실 인식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본거지로의 귀환이라는 움직임으로 표출되었다.

비교적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재일한국인 가운데 유소년의 경우 망연자실한 기분으로 일본 패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성인 남녀의 경우 모두가 조국의 해방을 기쁨과 새 출발의 마음가짐으로 맞이했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일본에서 창간된 잡지 『민주조선(民主朝鮮)』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한준과 장두식은 “이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해방된 우리 삼천만 민중 독립의 날, 우리는 몸속에 흐르는 모든 혈액을 분류(奔流)시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전쟁은 끝났다. 꿈은 아니다. 꿈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이 현실에 직면했다. 모두는 서로를 꼭 껴안고 기쁨의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했다. 한반도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잠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군인 군속이나 노동자에게는 일본 패전과 조국 해방이 더욱 더 감격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왔다.

해방을 맞이하는 재일한국인 집단의 특징으로서는 단신 노동자로 일본에 강제이입된 자가 많았다고 하는 점과 함께 정주한국인조차도 전반적으로 생활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직전 재일한국인들의 직업 구성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1943년 말 외무성조사국의 직업별 통계를 보면, 총 1,832,748명 중에서 생활 안정도가 높다고 일컬어지던 「유식직업」(7,792명)과 상업(34,734명), 농업(19,530명), 어업(791명)의 종사자는 모두 합해도 총 62,847명으로, 그들 모두를 정주자라고 보더라도 1938년 말의 재일한국인수 799,878명의 약 8%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대부분의 정주한국인들의 생활기반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생활조건이 열악함은 조국 해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인책과 함께 재일한국인들을 대거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로 귀환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44년 말 시점에 일본에 체류 거주하던 한국인 총수가 1,936,843명이고, 1947년 9월 일본국

내무성의 조사에 의한 재일한국인 수가 총 529,90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40만 명의 사람들이 해방 직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환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그 귀환자 수는 전시 강제동원 이입자 수보다도 많았다. 이것은 피징용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본국귀환운동의 분위기가 이미 1938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 와 있던 한국인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상당한 수의 정주자들도 귀환대열에 끼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방직후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은 ‘잔류’ 한국인들과 커뮤니티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로, 1988년에 출간된 「민단」 청년회의 설문조사 보고서가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잔류’ 한국인들이 해방을 맞았던 감정의 기억으로, ① 「감격했다」 (19.1%), ② 「기뻐다」 (47.8%), ③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았다」 (19.1%)라는 회답이 나왔다. 그리고 회답자 전체의 67.5%가 「해방 후 귀국 의사가 있었다」 라고 회답한 반면, 31.1%가 「귀국 의사가 없었다」 라고 회답했다. 이 설문조사가 ‘잔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47년 9월의 재일한국인수 529,907명에 대한 표본으로 생각하여 실제로 귀환해 간 140만 명의 귀국희망 의사를 합산한다면, 해방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의 거의 90%가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어, 해방직후의 한국인 귀환의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대다수의 ‘잔류’ 한국인들이 일본에 재류하면서도 해방된 한반도 국가로 참가하기를 희망했고 그 실현 방법으로써 민족주의를 내건 단체에 적극 참가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반도 귀환을 국가형성에 대한 직접적 참여라고 한다면 민족단체 활동은 국가형성에 대한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조사 결과, 회답자 전체의 75.2%가 해방 직후 「조련」(재일본한국인연맹), 「건청」(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 「민단」(재일본조선거류민단) 등에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단체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로서는, ① 「민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했다」(66.3%), ② 「친구와 친척의 권유로」(10.5%), ③ 「생활을 위해」(6.7%) 순으로 회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 재일한국인 사회에는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단체로서 「조련」과 그 산하단체, 「건청」, 「건동」(신조선건설동맹), 「민단」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조련」은 가장 먼저 결성되고 1949년 해산될 때까지 가장 많은 산하 조직과 조직원을 두고 있었다. 1946년에 들어서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는 당시 재일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남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탁통치가 일본제국에 대신한 연합국들에 의한 식민지배의 재현으로 받아들여져 특히 민족주의적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청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동조했다. 이에 따라 좌파 세력이 해방 직후 조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친일파 숙청’의 기치를 내세운 것과 같이, 「건동」을 비롯한 우파 세력들은 조직을 정비하여 좌파 조직에 반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탁을 내세워 한국인 대중들

의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조직 내에 끌어들이어 수세에 몰려있던 조직력을 강화해 갔다.

또한 「조련」은 남한의 좌파 연합체와의 연대 속에 찬탁을 지지함에 따라 스스로 정치적 입지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부적으로 「조련」의 좌경화를 반대하는 자들이 조직에서 대거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련」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규합하여 1946년 10월에 「민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기대하던 미소공동위원회가 전혀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조련」은 찬탁의 현실적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재일한국인 사회에 있어서도 남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찬탁과 반탁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인들을 규합시키는 논리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각각의 정치적 신조에 의하여 ‘국민체’를 평가름 하는 분열의 논리로 기능했다.

1948년에 들어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수립이 기정사실화 되어가자 재일한국인 민족단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와 함께 「조련」과 「민단」의 조직 방향도 명확해져 갔다.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되자 「민단」은 서울의 기념식전에 박열 단장을 비롯한 축하단을 대거 파견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민단」을 재외국민 단체로 인정하며 공인장(公認狀)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단」은 10월 4일 전체대회를 열어 조직 명칭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에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바꾸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시(國是)를 준수한다”는 강령을 채택했다. 당시 「조련」에 비해 현저하게 조직력이 떨어지는 「민단」에게 있어서 한국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된 것은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한편 1948년 9월 9일 북한정부가 수립되자 「조련」은 의장단 담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고 지지하여 오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된 것은 드디어 우리의 숙원을 달성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조련으로서는 중앙정부가 미소양군을 동시 철병시키고 남한의 이승만 정권을 타도할 것을 거듭 확신하며 위대한 사업완수에 전력을 집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각 지방조직이 자체적으로 경축대회를 갖는데 이어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해 10월 17일 공화국 창건 축하 중앙대회를 열었다.

「조련」이 공공연히 점령 정책에 저항하고 북한 정부를 지지한다고 판단한 일본의 점령당국은 이듬해 일본 법무성을 시켜 「조련」 조직의 강제 해산을 단행했다. 1949년 9월 8일 일본 법무성은 고시 51호를 통해, 「조련」의 전국 조직과 산하 청년기관 「민청」(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의 전국 조직, 거기에 결들여 「민단」 미야기현(宮城縣) 본부와 「건청」 시오카마(鹽釜) 본부를 ‘반민주주의 폭력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성 고시 57호를 통해 「조련」의 전 재산을 일본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으며, 「조련」임원 19명과 「민청」임원 9명, 「민단」임원 5명과 「건청」임원 3명을 각각 공직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상과 같이 해방직후에는 전반적으로 재일한국인 사회가 민족각성의 열기로 충만했다. 반면에 이러한 본국지향적 분위기는 재일한국인의 존재를 일본사회에 대한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일부 반체제 운동가들 가운데 정치투쟁, 생활권투쟁, 민족교육투쟁 등에서 일본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움직임도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사회에 대한 이질적인 움직임이었다. 해방직후 재일한국인들이 해방민으로서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의 정체성을 보인 분위기는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저해하는 한편 일본사회와의 연대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일본사회에 정착하고 있어 일본을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일본사회로부터 더욱 소외시키는 기재로 작용했다.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는 전후 새로운 일본사회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재일한국인이 원만하게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사회 전반에 깔린 단일민족 국가 논리를 도리어 정당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 五. 오늘날의 재일한국인 : 일본사회와의 공존과 민족성 약화

1970년대부터 재일한국인을 비롯하여 일본의 정주외국인들이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낳고 자란 재일한국인 2세와 3세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민운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차별 철폐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급료지급이나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의 행정적인 처우에서 상당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1975년 9월에 기타큐슈시(北九州市)의 시민단체들이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대해 시당국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시민운동의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영향을 받아 1993년 9월에 기시와다시(岸和田市) 의회가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또한 1995년 2월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의 입법 정책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 의회에서도 지방참정권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 7월 초에 연립여당 가운데 공명당과 보수당이 참정권 법률안을 제출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보수성향 정치가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이 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도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세대가 변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탈민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적 혹은 조선적 동포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일본 내 외국인등록자가 총 2,186,121

명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공표한 2009년 말 총 인구가 127,509,567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재일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조선 국적자가 578,495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 680,518명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그 뒤를 브라질 267,456명, 필리핀 211,716명, 페루 57,464, 미국 52,149명이 잇고 있다.

재일외국인 통계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특별영주권자 수의 변화다. 일본의 영주권자는 일반영주권자와 특별영주권자로 나뉜다. 일반영주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주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특별영주권자는 일본 패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한반도 혹은 대만 출신자, 또는 그의 자손으로서, 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1991년 11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하게 안정된 거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조치에 의해 퇴거 강제나 재입국 허가 등에 있어서 일반영주권자보다 완화된 규제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역사적 의미의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을 말할 때는 이처럼 몇 세대에 걸쳐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해 오고 있는 특별영주권자를 말하는 것이다.

2009년 말 통계에 의하면 재일한국인 특별영주권자는 405,571명으로, 2008년의 416,309명에서 10,738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10년간에 걸친 재일한국인 영주권자 인구의 변화를 다음 표에 정리했다. 일반영주권자가 매년 3천명을 전후로 하여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특별영주권자는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특별영주권자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출생률 감소와 같은 자연 감소 요인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85년부터 일본의 국적법이 종래의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되면서 일본국적 취득이 용이해진 까닭에 한국적이나 조선적의 재일한국인 어린이가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성의 인구통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985년 한 해에 재일한국인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한 부부가 2,404쌍이었던 것에 비해, 배우자로서 일본국적자를 선택한 사람이 6,147명 (남 2,525명 여 3,62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재일한국인끼리 결혼하는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국적자와 결혼하는 한국인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재일한국인 영주권자 수의 변화

영주권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	31,955	34,624	37,121	39,807	42,960	45,184	47,679	49,914	53,106	56,171
특별	507,429	495,986	485,180	471,756	461,460	447,805	438,974	426,207	416,309	405,571
계	539,384	530,610	522,301	511,563	504,420	492,989	486,653	476,121	469,415	461,742

이와 함께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한국적이거나 조선적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특별영주권자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52년 한 해에 재일한국인 232명이 일본국적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대체로 귀화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며 1995년부터는 그 수가 1만 명을 넘기 시작했다.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외국인으로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며, 이 외에도 일본 정부에 의한 귀화 요건의 완화, 계속되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 북한의 체제 문제와 북일 관계의 악화, 한반도 국가 정책에 추종하는 재일민족 단체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일본에 귀화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한반도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특별영주권자 감소 현상은 재일한국인 사회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족의식, 즉 본국 지향적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재일한국인의 역사 과정에서 민족의식의 원천이 되었던 일본사회로부터의 차별이 오늘날에도 잔존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한국인들의 아이덴티티로서 정보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탈국민국가’적 인식을 강조하거나, 더욱 더 나아가 정치적 귀속의식을 부정하는 ‘디아스포라’적 인식을 강조하는 움직임 등이 유행처럼 널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무작정 추종하기에는 주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한국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년).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한국인 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년).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 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 (글모인, 1995년).  
 한일관계사학회(편). 『한일관계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근현대]』 (경인문화사, 2006년).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歴史: 金英達著作集 3』 (明石書店, 2003년).

- 小松裕. 『韓国併合前の在日朝鮮人』(明石書店, 1994年).
- 鄭忠海. 『朝鮮人徴用工の手記』(河合出版, 1990年).
- 坪井豊吉. 『在日同胞の動き』(自由生活社, 1975年).
-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形成・構造・変容』(綠蔭書房, 2004年).
-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三一書房, 1979).
- 福岡安則. 『在日韓国・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中公新書, 1993年).

# 한말 한국인의 일본인식

## - 安重根을 중심으로 -

장석홍(국민대 교수)

### 1. 머리말

안중근의 구국운동은 1909년 이토를 포살한 하얼빈 의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궤적을 남겼다. 을사오조약의 강제 체결 후 구국운동에 투신한 그는 교육운동 및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1907년 정미칠조약의 망국 위기에서는 독립전쟁론으로 전환, 국외를 무대로 의병전쟁을 수행하다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포살 의거로 구국운동의 대미를 장렬하게 장식하였다.

안중근 구국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내재된 이념과 사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안중근의 사상적 요체를 밝히려는 노력에 의해, 안중근 사상의 핵심이 되는 동양평화론 또는 천주교 사상 등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또한 근래 안중근 관련 자료들의 집적, 정리는 향후 안중근 연구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중근의 사상적 기초와 구국운동의 성격을 對日本 인식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안중근의 구국운동이 당시의 정세 인식, 특히 대일 인식의 변천과 밀접한 함수 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갔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안중근은 원래 사상가나 이론가가 아니었으므로 많은 저술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사상적 편모를 구체적으로 살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서는 안중근의 활동과 자취를 크게 문명개화론적 지향의 단계, 국권회복운동의 단계 등으로 나누어 각기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일본 인식의 변천을 살피고,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안중근 구국운동의 성격과 의미를 검출하고자 한다.

### 2. 문명개화론적 지향과 대일본 인식

안중근의 초기 대일인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환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안중근은 해주에서 世居한 수천 석의 대지주가에서 태어났으며, 선조 중에는 고조부와 증조부가 무과에 급제함으로써<sup>16)</sup> 武班으로 이름을 높였으며, 조부는 명예직이

16) 《順興安氏參判公派族譜》 7권 참조. 족보에 의하면 고조부 安知豊, 증조부 安定祿이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긴 하지만 진해현감을 지낸 바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안태훈은 약관 20여 세인 1880년 무렵 進士試에 합격한 인재로서, 서세동점의 격변기에서 전통 儒學에만 머물지 않고 근대적 신문물의 수용에도 앞장 섰던 인사이기도 했다. 개화파 金宗漢의<sup>17)</sup> 문객이기도 했던 안태훈은 서울에서 3-4년 거주하면서, 朴泳滄 등 갑신정변 개화파들이 추진한 일본 유학생 선발에 뽑힐 만큼 개화 지향의 인사였다.<sup>18)</sup>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같은 계획은 무위로 돌아가고, 안태훈은 극심한 탄압을 피해 1885년 7,80명의 가솔을 이끌고 고향 해주를 떠나 깊은 산골인 신천군 두라면의 청계동으로 이주하였다.<sup>19)</sup>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청계동의 산골 마을에서 보내게 된 안중근은 유교 경전과 조선역사 등 전통 학문을 수학하는 한편 개화 인사인 아버지 안태훈의 영향 아래 문명개화적 분위기 아래 성장하였다.<sup>20)</sup>

안중근의 문명개화론적 행적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義旅의 선봉에 섰던 사실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황해도에서는 9월경부터 동학농민군이 황해도 전지역에서 봉기하여, 10월 초 해주부를 점령할 정도로 기세가 높았다.<sup>21)</sup> 당시 농민군 초기의 봉기 요인은 斥倭라기보다는 三政의 문란, 지방관과 吏胥층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폐정개혁의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sup>22)</sup> 양반층에 대한 공격도 감행되어졌다.

청계동 안태훈의 집도 동학농민군의 공격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1월 중순 동학농민군은 청계동 안태훈 집에 대한 공세를 취했고, 이에 안태훈은 포군 70여명과 촌정 100여명 등 170여명을 모아,<sup>23)</sup> 농민군과 일대 접전을 벌여 농민군 영장 3명을 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안중근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義旅의 선봉에 섰으며, 이 일로 아버지 안태훈은 황해감사 정현석의 추천으로 황해도 초모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동학농민군 탄압에 해주부와 義旅, 그리고 일본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안태훈과 일본군과의 연대가 이루어

17)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p. 59. 안태훈은 과거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 김중환의 집에 수년간 머무르면서 김중환이 시관일 때 소과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김중환은 김홍집 내각의 예조판서를 지내고 뒤에 궁내부 협판,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하였다. 한성은행 등 근대적 금융기관 창설에도 앞장섰던 그는 후일 정우회 총재 등을 맡으며 친일 행적을 남긴다(趙璣濟, 《韓國企業家史》, 박영사, 1973, pp. 114-119).

18) 신용하, 〈안중근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p.307.

19) 《안중근의 생애》, 《安重根傳記全集》, p. 132에 의하면, 이 무렵 안태훈은 “국사가 날로 틀러지니 부귀공명은 바랄 것이 못된다”하고, 또 “산에서 살면서 구름아래 밭이나 갈고 뉘시나 하면서 세상을 따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토로하면서 청계동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고 한다.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했던 안태훈은 갑신정변의 실패라는 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심한 좌절을 맛보아야 했으며, 개화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세적 욕망을 단념하고 은둔 생활을 모색했던 것이다.

20) 안중근의 문명개화론적 인식은 훗날 박영효에 대한 평가에서 “개혁(갑신정변; 필자주)을 도모하여 성사하지 못했다. 일본으로 망명하여 이번에 돌아와 궁내대신이 되고 칠조약 성립에 반대하여 謫配된 소위 忠臣이라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안중근의 공술〉,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pp. 417). 즉 그는 갑신정변을 개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pp. 396-397.

22)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p. 401.

23) 〈甲午海營匪擾顛末〉,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2, 1996, 역사문제연구소, p. 274.

졌던 점이다. 일본군이 황해도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11월 초였다.<sup>24)</sup> 신천 지역에도 일본군이 진격하여 농민군을 공격하여 수십 명을 사살하였으며,<sup>25)</sup> 일본군은 안태훈이 11월 19일 동학군을 섬멸하자 축전을 보내는 등 농민군 진압에 보조를 취하였다.

이후 11월 27일 해주 전투 이후 관찰사 조희일은 민심을 수습하고자 초모관과 일본군 지휘관이 합석한 회의를 열고, 무자비한 토벌 전략을 수정하여 농민군을 설유 해산시키는 우회전술로 전환하였다.<sup>26)</sup> 안태훈이 이 회의에 참석했는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황해도 지역의 유력한 초모관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참석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지침이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7)</sup> 그런 점에서 안태훈의 동학 농민군 탄압은 조선정부, 일본군과의 연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안태훈의 反東學的 입장은 개화적 인식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기득권층과 피지배층과의 관계가 복합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주지하듯이 개화와 동학의 상반된 입장은 이념적 지향의 차이에서 오는 피치 못할 갈등이기도 했다. 개화가 서구의 논리를 수용, 추구하였던 것에 비해 동학은 외세를 배척하고 전통논리에 의해 반봉건의 구현을 모색했던 점이 달랐다. 때문에 양자의 현실적 대응은 상반된 양상을 띠 수밖에 없었다. 개화의 입장에서는 동학군의 봉기가 민란 내지는 폭도이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이 같은 인식은 안중근이 훗날 저술한 자서전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안중근의 반동학적 사상은 초기 개화사상이 갖는 엘리트적 개화 사상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sup>28)</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안태훈이 海西의 대학자로 꼽히는 高能善같은 척사 유림을 청계동에 받아들인 점이라든지, 金九를 후의로 폭넓게 수용한 점 등은 안태훈의 인물됨이 어느 한쪽에 편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sup>29)</sup> 省齋 柳重教의 문인이며, 의병장 毅庵 柳麟錫과는 동문이었던 고능선과 개화적 인사인 안태훈과는 사상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1895년 을미년에 민비시해와 단발령에 접하여 의병 起義를 놓고 고능선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안태훈이 신중론을 펴 의병 기의를 거절함으로써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했다. 이때 안태훈은 “아무 승산 없이 일어났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

24) 〈黃海道東學黨征土狀況〉,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p. 303.

25) 〈갑오해영비요전말〉 11월 13일. p. 733.

26)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p. 417.

27) 김구가 청계동 안태훈의 집을 찾았던 것은 1895년 2월이었으며(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집문당, 1995, p. 41), 이때 동학군 소접주였던 백범 김구가 청계동 안태훈의 집에 수개월 기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민군의 실유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28) 윤경로, 〈안중근 사상 연구〉, p. 67.

29) 안태훈의 인품에 대해 백범은 다음과 같이 회술하였다. “안진사 형제는 모두 文士의 풍모가 있었으나 유약해 보이는 점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안진사는 눈빛이 찌를 듯 빛나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당시 조정 대관들 중에 글로써 항쟁하던 자들도 처음에는 안진사를 악평하였지만, 얼굴만 마주 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얼굴만 마주 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관찰로도 그는 껍 소탈하여 무식한 아랫사람들에게도 교만한 빛 하나 없이 친절하고 정중하여 위아래 모두 더불어 함께 하길 좋아하였다”(《백범일지》, pp. 41-42).

으니 기의할 생각이 없고, 천주교를 믿다가 후일 기회를 보겠다”는 것이었다. 뿐 아니라 그는 지금 당장 머리를 깎아야 한다면 깎을 의향까지 내보임으로써,<sup>30)</sup> 결국 고능선과 절교하고 말았다.<sup>31)</sup> 즉, 안태훈은 척사 유림의 의식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또 천주교로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청일전쟁은 안중근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청·일 두 나라가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무예와 병법을 익혔던 안중근은 文弱에 빠진 조선의 참담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으며, 武強의 尙武精神을 더욱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훗날 《동양평화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안중근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인을 명치유신 이래의 부국강병과 민족적 단합에서 찾고 있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문명개화론자들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모델로서 일본을 설정하였듯이<sup>33)</sup> 이 무렵 안중근은 아버지 안태훈의 일정한 영향을 받으며 일본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 같다. 한국이 중국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는 일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 것도 사실이다.

안중근의 문명개화론적 지향은 천주교와의 만남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천주교 입교는 역시 아버지 안태훈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동학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으로부터 탈취한 양곡 500석을 군량미로 사용한 것이<sup>34)</sup> 문제가 되어 후일 정부에서 양곡 반납을 요구해 오자, 안태훈은 천주교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무마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주교 교당에 피신하던 안태훈은 천주교강론을 듣고 성서를 읽으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계동에 돌아온 안태훈은 1897년 1월에 프랑스인 빌렘 신부를 초빙하여 안중근과 가족 등 36명을 영세 받게 하였으니 이때가 안중근의 나이 19세 때의 일이었다. 안태훈은 천주교의 선교에 앞장서는 한편 본당 축성 사업을 벌여 산골동네인 청계동에다 황해도에서는 두 번째 본당을 설치하는 적극적 열의를 보였다. 그 결과 1898년 4월에는 마림에 있던 빌렘 신부가 이곳 청계동 본당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계동은 황해도 포교사업의 지휘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8년에 140여명이던 청계동의 교세는 1900년에 25개 공소에 영세 신자 8백 여명, 예비 신자 6백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1902년에는 영세 신자 1천 2백 여명, 예

30) 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p. 64.

31) 이 일에 대해 백범은 “안진사의 인격으로 된 것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은 토벌하고 서양 오랑캐가 하는 西學을 한다는 말이 매우 괴이하였다”라고 회술하고 있다(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p.64).

32) 그는 《안응칠역사》에서, “나라에서 文을 숭상하고 武를 업신여겨 백성이 군사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나라는 점점 약하여져, 만약 갑자기 외국 열강이 우리의 약함을 노려 침략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武強의 기품을 조성함으로써 앞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33) 조재곤, 〈한말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2000, pp. 159-160.

34) 당시 안태훈이 동학군으로부터 탈취한 양곡이 정부미라는 설과 魚允中 개인 소유의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어윤중이 황해도에 그러한 대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그 후에 閔泳駿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부미 설이 유력하다고 하겠다(慎鏞廈, 〈安重根의 思想과 義兵運動〉,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1985, pp.146-147).

비 신자 9백 여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sup>35)</sup>

빌렘 신부로부터 교리 수업을 받아가며 독실한 신도가 된 안중근은 빌렘 신부를 수행하여 해주, 용진 등지의 황해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활동을 벌였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행하기도 했다. 전도 활동 중에 안중근은 일반 대중과 접하면서 그들의 교육 수준이 저급한 것을 보고 문명개화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는 인재 양성 및 포교를 위해 '천주교대학'을 서울에 설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sup>36)</sup> 당시 안중근이 구상한 천주교대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지만, 정규 교육 과정의 대학이 아니라 천주교 신앙과 문명개화의 교육을 목표로 한 교회 부설의 교육기관 정도가 아니었나 추측되어 진다.

그러나 안중근이 구상한 대학 설립의 계획은 뫼텔 주교를 비롯한 천주교 신부들에 의해 단호하게 거절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학문을 하게 되면 믿음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안중근은 대학 설립의 승낙을 얻고자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끝내 외국인 신부들이 반대함으로써 대학 설립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인들의 근대화 내지 변화에 대하여 프랑스 신부들의 부정적 시각을<sup>37)</sup> 확인한 안중근은 이후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오로지 포교에만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 신부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자신의 민족적 의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주교의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 신부들의 심정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빌렘 신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배우던 프랑스 말도 중단하고 말았다.<sup>38)</sup>

그렇다고 안중근이 천주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신앙은 민족적 의식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신앙 자세는 죽는 날까지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그런 가운데 황해도의 신도수는 1899년 1,800명에서, 1900년에는 4천여 명, 1901년에는 5천 4백여 명, 1902년에는 7천여 명으로 급증하면서<sup>39)</sup> 교세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청계동의 모든 주민이 입교했을 뿐 아니라 황해

35) 천주교의 축일에는 백 여 리 밖의 신도들까지 모여들어 청계동 본당에는 겨우 3분의 1정도만이 입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36) <안중근 신문조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233. 1909년 당시 10여 년 전쯤에 서울에 천주교 대학을 세울 계획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19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상정해 보았다. 대학 설립의 시기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최석우는 1900년, 조광은 1907년 4월, 원재연은 1902년, 윤선자는 1902년 11월로 보고 있다(윤선자, <'한일합병' 전후 황해도 천주교회와 빌렘신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p. 117).

37)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 후기 사회변동》,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p. 153.

38) 그는 《안웅칠역사》에서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벗이 묻기를, '왜 배우지 않는가' 하기로, 대답하기를 '일본말을 배우는 자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영국말을 배우는 자는 영국의 앞잡이가 된다. 내가 만약 프랑스 말을 배우게 되면 프랑스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를 폐하였다. 만약 우리 한국이 세계에 떨친다면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네는 이를 염려하지 말게'라고 하였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pp.141-142).

39) 윤선자, <'한일합병' 전후 황해도 천주교회와 빌렘신부>, p. 115.

도 전역에서 급속히 교세가 확장될 수 있었다. 이 같은 교세 확장에는 빌렘 신부의 활약과 안태훈, 안태건 형제의 헌신적 노력과 더불어 천주교 측이 교우들의 사회적, 경제적 이권을 대변하는 등 교인의 신상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sup>40)</sup>

그러나 안태훈 가족의 천주교 전도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sup>41)</sup> 안태훈 형제는 천주교도를 탄압하던 관리에 의해 여러 번 체포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海西教案’이 발생하게까지 되었다. 이러는 동안 안태훈과 안태건이 번갈아 가며 투옥되었으며, 특히 안태훈은 주모자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해서교안의 중심에 안태훈 형제가 개입되었으므로, 안중근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 주교에 구원을 요청하는 등<sup>42)</sup> 몇 년간을 해서교안에 매달려 분주하게 보내야 했다.<sup>43)</sup>

그 과정에서 안중근은 횡포한 관리를 대상으로 투쟁을 벌이며<sup>44)</sup> 부패한 봉건사회의 모순에 항거하는 등 사회의식을 성숙시켜 갔지만,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당시의 민족 현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천주교의 틀 안에서 문명개화를 추구하는데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안중근은 러일전쟁 때까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러시아가 남하하여 만주 일대를 점령하여 군사를 두고 또 여순항을 군항으로 삼아 한반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력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일본이 한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와 싸운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sup>46)</sup> 이 무렵 그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 러시아를 가장 경계하였다. 그것은 그의 표현대로 ‘백색인종’에 대한 경계심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에 침략하게 되면 한국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와 영토를 맞대고 있었으므로,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한국의 위협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sup>47)</sup>

40) 윤경로,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역사적 관계〉,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1992, p. 84.

41) 崔奭祐, 〈海西教案의 研究〉, 《韓國教會史의 探求》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pp. 416-417. 빌렘이 교안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신천군수에게 체포된 안태훈을 석방하면서였다. 1898년 2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투옥된 안태건과 그를 구하려 갔다가 투옥된 안태훈을 해주감사에게 항의해 석방시켰으며, 1899년 3월 경 안태건 등이 도적으로 몰리자 신천군수와 안악군수를 방문해 석방시키는 등 안태훈 집안과 관청의 갈등과 반목은 끊이지 않았다.

42)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주교일기》 2, 1993, p. 233.

43) 안중근은 해서교안을 횡포한 관리들의 천주교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윤경로, 〈안중근 사상 연구〉, pp. 68-69).

44) 《안응칠역사》, pp. 144-148.

45)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5-6. 청계동 시절 “국사나 정치에 분주한 일이 없었으며, 을사오조약을 통해 처음 깨달았다”고 하는 그의 진술이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46)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171.

47) 안중근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러시아는 동양함대를 조직하고 프랑스, 독일과 연합하여 요코스카 해상에 진입하여, 일본이 청일전쟁의 대가로 빼앗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할 것과 배상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해 왔다.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천하의 공법을 따르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나 그 내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한국분할을 제의하게 되고<sup>48)</sup> 또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러시아에 대한 위기 의식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러시아가 의화단 토벌을 이유로 한국 북부지방에 침투를 기도하자 한국 지식층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한일양국의 제휴 내지 연대를 통한 방어를 적극 모색해 갔다. 한국의 지식층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갔던 데에는 무엇보다 한국의 자위력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 전제된 것이기도 했다.<sup>49)</sup>

그는 러시아를 도덕을 잃고 무력으로 경쟁하는 서양 세력의 대표로 인식하였으며, 부동항을 얻기 위하여 동양을 넘보는 침략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러일전쟁의 본질을 황인종과 백인종의 싸움으로, 또 한국을 침략하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본이 대항하여 전쟁을 참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국력을 기울여 동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남으로 하얼빈까지 핵파하여 러시아를 완전히 굴복시켰어야 했다고 할 정도로<sup>50)</sup>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굳은 신뢰마저 보이고 있었다.<sup>51)</sup>

이처럼 러일전쟁이 백인종 대 황인종의 대결로 부각되면서 인종주의적 전쟁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비단 안중근의 경우 뿐 아니라 당시 계몽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성향이기도 했다.<sup>52)</sup>

### 3. 국권회복운동의 전개와 대일본 인식

안중근이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직면하여 구국운동에 투신하는 것은 러일전쟁이 끝날 무렵의 일이었다. 러일전쟁이 마무리되던 1905년 4월 일본은 각의에서 ‘한국 보호권확립’을 결의하였고, 그 해 8월 2차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한국의 보호국화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의 한국 침략 야욕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

면에는 사랑의 심술보다 더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몇 해도 못 가서 교활한 수단으로 旅順口를 조차하여 군항을 확장하고 철도건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인은 수십 년 이래 奉天 이남의 大連, 旅順, 牛莊 등의 따뜻한 항구를 한 곳이라도 차지하려는 욕심이 불과 같았으나 감히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청국이 영국 프랑스의 양국으로부터 天津을 침범당하고 關東의 각 요새에 신식 병기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한 때문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었다(《동양평화론》, 《安重根傳記全集》, p. 195).

48) 현광호, <대한제국기 삼국제휴방안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4, 2000, pp. 20-21.

49) <안중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171-172.

50) 《동양평화론》, 《安重根傳記全集》, p. 198.

51)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244. 안중근은 “실제 한국 인민은 일로전역 전까지는 好個의 친우로 일본국을 좋아했고, 한국의 행복으로 믿고 있었다. 우리들 따위도 결코 배일사상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2)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 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pp. 18-21.

안중근은 이 무렵 서울에 머물면서 일본의 노골적 침략 만행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었다.<sup>53)</sup> 그리고 국제질서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 세상이고, 만국공법은 실력이 없는 나라에게는 무력한 것임을 통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중근의 행동하는 지성은 이제까지의 문명개화적 지향에서 탈피하여 강렬한 구국의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안중근은 당시의 정세를 주로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미국의 공립신문 등의 논설을 통하여 파악하면서<sup>54)</sup> “시기는 늦었으나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sup>55)</sup> 신념 하에 구국의 적극적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구상한 것은 상해 망명 계획이었다. 을사오조약을 통해 일제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도 계몽주의 지식층 가운데는 정작 일본의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56)</sup> 또한 침략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일본이 내세운 명분에 의지한 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아버지 안태훈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부질없이 죽을 뿐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므로, 중국 산둥이나 상해로 집안을 옮겨놓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겠다는<sup>57)</sup> 계획을 세우고 1905년 말 상해로 향하였다.<sup>58)</sup>

그러나 상해에서 만난 르각 신부의 권유로<sup>59)</sup> 국내에서 활동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안중근은 1906년 1월 귀국한 뒤, 1906년 봄 청계동에서<sup>60)</sup> 진남포로 옮겨, 교육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삼흥학교와 돈의학교 경영에 힘쓰는 한편 서북학회에 가입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 무렵 접하게 된 안창호의 연설은 안중근의 구국의식을 강고하게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61)</sup>

1907년에 들면서 안중근의 의식은 계몽운동의 방략으로는 쓰러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국의 망명의 뜻을 품고 서울

53) 안중근이 서울에서 1905년 9월 9일자로 아버지 안태훈에게 보낸 서한에는 당시 일본의 노골화된 침략 야욕을 직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이 서한 자료는 서울 誠庵고서박물관장 趙炳淳 소장; 윤선자, 〈안중근의 천주교신앙과 애국계몽운동〉, 《안중근의 의열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승모회, 1998, p. 26에서 재인용).

54)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5-6.

55) 〈안중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233.

56) 金度亨, 〈韓末 啓蒙運動의 政治論 연구〉, 《韓國史研究》 54, 1986, p.86.

57) 《안응칠역사》, pp. 153.

58) 빌렘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한국을 병합하게 될 것이요,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한국을 관할하려 들 것”이라며 어떠한 계몽주의 세력이 한국을 병합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는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민족운동 반대로 변하였다. 안중근이 민족운동을 전개하려 하자, “만일 네가 여기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려 한다면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자”며 반대하고 나섰다(빌렘 신부가 청계동에서 로렌 지방의 친구들에게 보낸 1912년 3월 19일자 서한; 윤선자, 〈한일합병 전후 황해도 천주교회와 빌렘신부〉, p. 123에서 재인용).

59) 이때 르각은 “첫째는 교육의 발달이요, 둘째는 사회의 확장이요, 세째는 단합이요, 네째는 실력의 양성이니 이 네가지를 철저히 성취시키면 2천만 정신의 힘이 반석과 같이 튼튼해서 비록 천만 문의 대포를 가지고서도 능히 공격하여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안응칠역사》, p155).

60) 안태훈은 진남포로 오는 도중 1905년 12월 처가인 재령의 金能權 집에서 4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귀국한 안중근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진남포로 이주하였다(李全, 《安重根血鬪記》, 연천중학교기성회, 1949, p. 42).

61) 〈참고인 안정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25.

로 올라왔다. 서울에 여러 달을 머무는 동안 그는 동년 5월 서북학생친목회에서 개최한 삼선평의 운동회에도 참가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창호를<sup>62)</sup> 비롯한 유동열·노백린·이동휘 등의 지사들과 교류하면서 국권회복운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무렵 대한제국은 일제의 노골적 침략에 의해 사실상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자 일제는 이를 구실로 동년 7월 18일 光武皇帝를 강제 퇴위시키고 무력한 隆熙皇帝를 상대로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7월 24일 ‘新聞紙法’을 공포하여 언론 출판의 검열을 강화하였으며, 이어 27일에는 ‘보안법’을 공포하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일련의 침략사태에 반발할 국민적 저항에 대처하는 악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31일에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한국의 주권 수호 능력을 완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안중근은 이 광경을 직접 목도하면서 독립전쟁론에 의거한 국외 망명을 단행하였다. 이 무렵 그가 구상한 독립전쟁론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5년 쯤 뒤에는 일본의 팽창주의로 말미암아 러시아나 청, 미국 등 3국 중 어느 나라와 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그때를 독립의 호기회로 삼아 독립을 달성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일본이 패전하여도 한국은 또 다시 외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므로 의병을 계속 일으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sup>63)</sup>

이렇듯 그는 의병전쟁을 통하여 당장에 독립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병전쟁이 ‘송곳으로 큰산을 뚫는 것과 같은’ 형상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길만이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고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길이었으므로 택한 것이었다.<sup>64)</sup>

노령 연해주로 망명한 그는 각 마을을 돌며 의병 모집을 위해 힘을 쏟았고,<sup>65)</sup> 의병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의병부대 창설 직후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일본군인과 일본 상인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대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국제공범에 의거하

62)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pp. 476-478.

63) 《안응칠역사》, pp. 159-161.

64) 〈안응칠의 공술〉(제11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pp. 434-444.

65) 그때 연설한 유세 내용의 일부분을 《안응칠역사》에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한국의 內地 13도 강산 곳곳에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은 데가 없다. 만약 의병이 패하는 날에는 奸賊들은 옹고 그리고를 가리지 않고 폭도라는 핑계로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을 불지를 것이다. 이처럼 된 다음에 한국민족들은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오늘날 한인인 국내 국외를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가 총을 메고 칼을 차고 일제히 의거하여 승패를 돌봄 없이 한껏 한바탕 싸워 천하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는 부끄러움을 면해야 할 것이다. 오늘로부터 의병을 계속 일으켜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을 길러 스스로 국권을 되찾고 독립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pp.160-161).

여 포로들을 석방했던 사실이다. 당시 부대원들은 포로 석방에 대해 강렬하게 반대했으나, 국제공법에 의거하여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으며, 또 어떤 곳에서 사로잡혔다 해도 뒷날 돌려 보내주게 되어 있다”면서 포로를 석방한 것이었다.<sup>66)</sup> 독립전쟁의 치열한 와중에서도 안중근의 대일본 인식은 감정적 원한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정의 인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는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道의 기준에 따라 포로를 석방하였으며, 그것은 높은 수준의 인도주의적 실천이기도 했다. 혹 이상주의에 의한 비현실적 태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투 중의 적군 사살과 포로의 사살을 분별할 수 있었던 안중근의 면모는 후일 이토 히로부미 포살 의거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전거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 포로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sup>67)</sup> 안중근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동양평화의 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제국주의의 침략은 배척해도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았던 안중근의 자유와 정의를 향한 높은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4. 동양평화의 구도와 대일본 인식

안중근이 전개한 구국운동은 한국의 독립과 나아가 동양평화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얼빈의거 이후 생애의 마지막 작업으로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의 저술을 시도했던 것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동양평화를 갈망했는가는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 체계 내지 이념은 아니었다. 서세동점의 격변기에서 위기에 처한 동양의 삼국은 1880년대부터 제각기 삼국의 제후 내지 연대를 표방하였다. 그것은 서양 백인종의 침략에 대한 아시아 황인종의 대응이란 구도에서 인종적 제후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는 문화적 동질성과 인종적 제후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sup>68)</sup> 그리고 이러한 인종적 제후론은 사회진화론과 결합하여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초월한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66) 《안응칠역사》, pp. 161-164.

67) 《안중근 선생 공판기》, pp. 176-178. 안중근의 진술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계급의 일본사람과도 많이 만나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 해본 적이 많다. 먼저 군인과 만난 이야기를 하겠다. 그 군인은 수비대로 온 군인인데 그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외에 와있지만, 아마 고향에 부모처자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밤엔 밤잠이 오지 않겠구려 하고 물으니, 그 군인 대답하기를 나는 부모처자도 있는데 국가의 명령으로 수비대가 되어 과전받았으니 그리운 정은 이루 말할수 없오하고 말하면서 눈물을 흐렸다. 그러면 동양이 평화하고 日韓 양국이 무사하면 이런 슬픈 일이 없지 않겠오 하고 물으니 그 군인은 자기는 전쟁하는 것은 싫으나 수비대가 되어 와있는 이상 싸우지 않으면 아니될 때는 싸워야 할테니 고국에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일본 정부에는 간신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여 동양의 평화를 각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마음도 없는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테니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하리라고 생각을 먹고 있으나 자기의 한사람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68)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후론’>, pp. 10-18.

서양 백인종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같은 문명개화의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안중근의 동양평화사상 형성에는 천주교와 《泰西新史》·《萬國史》·《萬國公法》 등의 저술 및 신문·잡지류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69)</sup>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일 것은 이상설과의 만남이다. 이상설이 헤이그사행의 正使로 활약한 뒤 구미 각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은 1909년 여름이었다. 이때부터 이상설과 안중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몇차례 만남이 전부였지만 이상설에 대한 안중근의 흥미와 평가는 남달랐다. 이상설에 대한 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09년 여름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동인의 포부는 매우 크다. 세계 대세에 통해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범윤 따위는 만인이 모여도 미치지 못한다. 동인의 의병에 대한 관념은, 한인이 일본에 보호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伊藤이 中外에 선전하는 것을 반증하는데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굳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양인간에 불화를 초래하여 인심의 일치를 맺지 못하게 되면 동양의 평화가 스스로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회 면회하여 그의 인물을 보니 기량이 크고 사리에 통하는 大人物로서 大臣의 그릇됨을 잃지 않았다.<sup>70)</sup>

才士이며 법률에 밝고 산술에 달하다. 영·불·일어에 통한다. 사람은 지위에 따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므로 崔益鉉·許薦 등에 견주면 용맹한 기상을 혹 적겠으나 지위를 달리하므로 하는 수 없다. 세계 대세에 통하고 애국심이 강해 교육발달을 도모하고 국가 백년의 대계를 세우는 자는 동인일 것이다. 또 동양평화주의를 가지는 위에 있어 동인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다.<sup>71)</sup>

위의 인용문에서, 안중근은 이상설을 국제정치와 세계 대세를 통하여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는 진정한 동양평화주의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안목에서 국가 백년의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하였다.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 이후 訊問 과정에서 수십 명에 대한 인물평을 볼 수 있는데, 동양평화주의자로 지목한 인사는 이상설 한사람뿐이었다.<sup>72)</sup> 의병에 섰던 안중근과 외교노선을 추구한 이상설, 두 사람은 비록 방향을 달리했지만, 동양평화를 염원하는 뜻은 같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상설의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견은<sup>73)</sup> 안중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69)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pp. 475-477.

70) 〈안응철의 공술〉 1909. 11. 2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p. 408.

71) 〈안응철의 공술(제5회)〉 1909. 12. 2, p. 418.

72) 訊問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안중근의 인물평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지향과 투쟁노선의 지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73) 이상설의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견은 러시아 극동총독 콘지다스지에 까지 알려져, 이상설은 총독 고문의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윤병석, 《李相高傳》, 일조각, 1984, pp. 157-158).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의 '序'에서 밝히듯이, 국제정세의 양상을 동서양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양 평화의 보전을 주장하였다. 그가 내세운 동양평화의 범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태국, 미얀마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자주 독립을 유지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74)</sup> 동양평화를 유지하려면 이들 국가가 일치 단결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뻗어나오는 화근에 대해서 동양의 인종은 일치 단결하여 극력 방어하는 일이 상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분명히 깨닫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 일본은 이 순연의 대세를 들보지 않고 동종의 우방을 분할하여 우의를 깨트리고 스스로 물고기 다툼을 현출하여 낚시꾼을 기다리는 꼴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과 청국의 양국 사람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현재의 정략을 크게 단절하는 일이다.<sup>75)</sup>

그의 동양평화론은 일차적으로 러시아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동양 삼국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었다.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한국과 청국의 지원 및 역할이 컸음을 역설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강했던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의 인민이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 두나라가 일본을 도운 것은, 첫째 러시아와 일본이 개전할 때 일본왕이 선전포고문에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공히 한다>는 大義를 밝혔던 점에 의해서, 둘째 황색인종과 백색인종의 싸움에서 인정의 당연한 순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러한 양국의 지원을 외면한 채 한국의 국권을 빼앗고 만주 땅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동양평화의 소망을 저버리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자연 발생적으로 의병이 봉기해서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하여 이미 십수만의 의병을 살해하였으며 수백의 의병장을 살해했다. 이제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것으로 알고 일본을 경계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창 양국의 그와 같은 동양평화의 소망을 저버림으로써 동양평화는 깨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계속하여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꺾박한다면 그로 인하여 일본은 자체의 파멸을 자초할 것인 즉, 동양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 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야욕을

74) <안중근 신문조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174.

75) 《동양평화론》, pp. 193-194 참조.

버리는 것이라 했다. 그러한 연후에 서로 독립한 한국 일본 청국의 삼국이 동맹하여 일심 협력해서 서양세력의 침략을 방어해야 만이 동양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76)</sup>

단 여기에서 전제는 동양 삼국이 각기 독립의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단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일제가 내세우던 아시아연대주의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외형상 일견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본질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점인 것이다.

아시아연대주의는 일제 침략 정책에 불과한 논리로 겉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당하여 동양 삼국이 연대하여 동양 평화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을 외치고 있으나, 여기에서 삼국의 연대는 평등한 관계의 연대가 아닌 상하의 관계로 설정된 것이었다. 즉 일제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설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연대주의의 또 하나의 본질은 일본 자체의 독립 보전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이기적 정략의 소산인 아시아연대주의는 일본의 침략정책과 국가적 타산을 은폐하는 수단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따라서 삼국의 독립을 전제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향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는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의 구도는 대체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한국과 청국이 정립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동양 삼국의 동등한 자격을 논의하면서도, 현실적 차원에서 일본의 주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매우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이와 같이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 실질적 사상성을 띠고 있었다.

그의 동양평화에 대한 구상은, 일단 旅順을 중국에 돌려 준 뒤 평화의 근거지로 삼아 한·중·일 삼국의 공동 관할 하에 두고, 삼국 대표에 의한 평화회의 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동양평화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주창했다. 또한 평화근거지인 여순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출자 형식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것과, 삼국의 청년들로 軍團을 구성하는 등 경제, 군사 방면에까지 이르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들 청년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삼국의 황제들이 로마 교황에 의한 대관식을 갖도록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천주교적 세계관도 포함되어 있었다.<sup>77)</sup>

그러나 진정한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스스로가 침략성을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동양에서 자행한 침략은 종래 외국에서 써오던 수법을 흉내낸 것으로 그와같은 방법으로는 진정한 패권자가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이 세계의 일등국이 되고 진실한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일본이 취한 침략의 방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다.<sup>78)</sup> 그런 점에서 침략의 원

76) 〈안중근 신문조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174.

77) 〈청취서〉;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pp. 55-57.

78) 〈청취서〉, pp. 54-55.

홍인 이토 히로부미의 포살 의거는 진정한 의미의 동양평화의 출발이 되는 것이었다.

## 5. 인물관을 통해 본 안중근의 세계관

안중근이 전개한 독립운동으로 볼 때, 그는 전형적 계몽주의에 머물지도, 그렇다고 전통적 의병주의자도 아니었다. 이러한 안중근의 독립운동은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된 것으로, 독립운동상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안중근은 심문과정에서 한국의 저명 인사들에 대한 인물평을 진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중근의 세계관과 독립운동 노선을 엿볼 수 있다고 파악된다.

◎ 이상설 : 1909년 여름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동인의 포부는 매우 크다. 세계 대세에 통해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범윤 따위는 만인이 모여도 미치지 못한다. 동인의 의병에 대한 관념은 의병을 일으키나, 한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등이 중외에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으로는 굳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인간에 불화를 초래하여 인심의 일치를 맺못하게 되면 동양의 평화가 스스로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회 면회하여 그의 인물을 보니 기량이 크고 사리에 통하는 대인물로서 대신의 그릇이 됨을 잃지 않았다. 재사이며 법률에 밝고 산술에 달하다. 영·불·일어에 통한다. 사람은 지위에 따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므로 최익현·허위 등에 견주면 용맹한 기상이 혹 적겠으나 지위를 달리하므로 하는 수 없다. 세계 대세에 통하고 애국심이 강해 교육발달을 도모하고 국가 백년의 대계를 세우는 자는 동인일 것이다. 또 동양평화주의를 가지는 위에 있어 동인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다.<sup>79)</sup>

◎ 유인석 : 1908년 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다. 귀가 어둡고 눈이 약해 매우 노쇠하였다. 학자의 풍모로 다언을 좋아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다만 일본인을 미워할 뿐이며 세계의 대세 동양의 白面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결코 금일의 형세에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노인이므로 경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80)</sup>

◎ 안창호 : 평양에서 연설할 때 대단히 잘하므로 누구냐고 물었더니 안창호라 해서 알고 있다.<sup>81)</sup> 웅변의 연설가이다. 주의로서는 교육 발달을 도모하여 국가의 기초를 굳게 하려는 有志家이다. 미국의 사주를 받을 인물이 아니다. 최초 평양에서 야소교를 신앙하고 있을 때 미국 선교사가 노예와 같은 대우를 한다하여 이를 구타한

79)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0) 안응칠의 공술(제2회), 1909.11.2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2쪽.

81) 안응칠의 공술(제2회), 1909.11.2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1쪽.

일도 있어 평양에 있는 것이 불쾌하다 하여 일본으로 박영효를 찾아가 의견을 교환한 일도 있으나 동의하지 않아 이미 면학을 위해 미국으로 갔던 인물이며 가장 사상이 건실하다.<sup>82)</sup>

◎ 이갑 : 인사한 일이 없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동양의 대세를 고려하여 러일전쟁에 종군하였는데, 동양평화를 유지하여 한국의 독립을 기하기 위해 전쟁한 것이다. 그런데 이등의 정략은 앞서의 선언을 먹어버리고 한국을 강탈하려는 야심이 있음을 꿰뚫어 보고 그는 사직하고 하여 교육에 열심하고 민지 발달을 도모하는 소위 의사이다.<sup>83)</sup>

◎ 양기탁 : 인사한 일이 없다. 이름은 알고 있다.<sup>84)</sup> 서로 교제도 인사도 없다. 그러나 신문사업에 열심하여 민지발달에 資한 사람이므로 有志家이다.<sup>85)</sup>

◎ 유동열 : 이갑과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나 이갑의 事蹟만큼 모른다.<sup>86)</sup>

◎ 장지연 : 文士이다. 애국지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sup>87)</sup>

◎ 김기룡 : 착실하며 겁이 있다. 의병의 행동같은 것은 할 수 없는 사나이다. 편지를 써서 주든지 또는 심부름 노릇을 하는 정도라 과격한 악심을 가진 자가 아니다.<sup>88)</sup> 26,7세로 함경도 사람이다. 청나라 땅에서 1908년 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하리의 먼저번 여관에서 만났다.<sup>89)</sup>

◎ 최봉준 : 블라디보스톡에서 부자이다. 의병담을 서로 나누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겁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의 생명과 돈을 사랑하는 이외는 아무 것도 안중에 없는 인물이다. 노령에서 호홉하고 돈이 있고 집도 있는 것은 다 露人의 덕이기 때문이다.<sup>90)</sup>

◎ 홍범도 : 1908년 여름 갑산지방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인의 인격을 보고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인지 찾아 갔으나, 일병에 쫓기는 와중이라 면회할 수 없었다. 그 후 6월 경 회령지방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잔병 10여 명 가량을 영솔하고 있었다. 나는 양민을 가장하고 단총만을 휴대하고 홍치범 윤치중 김기열을 이끌고 갔었다. 홍은 40세 가량인데 용맹하고 기력이 있으나 무학으로 시세에 통하지 않았다. 원래 금광부를 한 자이다. 동인은 단발자를 보는대로 살육한다고 들었으므로 그 불가한 소이를 설유하고,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양민을 멋대로 살해해서는 안된다. 시세에 불통하나 인군에 대한 충성은 가장 깊고 또 청렴하여 양민의 재물을 침범하지 않고 의복 같은 것도 매우 조박한 것을 입고 있었다. 산중의 홍의 막영에서 하룻 밤을 밝히고 다음날 아침 일병이 공격할 조짐이 있다고 하여 홍은 무산 방면

82)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3)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4) 안응칠의 공술(제2회), 1909.11.2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2쪽.

85)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6)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7) 위와 같음.

88) 안응칠의 공술(제3회), 1909.11.2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7쪽.

89)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3쪽.

90) 안응칠의 공술(제3회), 1909.11.2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7쪽.

으로 나는 회령에서 간도로 건너가 산길로 혼춘에서 연추로 나왔다.<sup>91)</sup> 노동계에서 나와 국가의 위난을 구하려고 한다. 그 뜻이 아름답다. 애국의 의사 충신임을 잃지 않는다.<sup>92)</sup>

◎ 민영환 : 충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인가? 자기 혼자 죽어 국가에 끼쳐 둔 어떤 공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 그의 죽음은 국가에 덕이 되는 것이 없다. 그는 혹평하면 사후에 충신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 自服한 것이 아닐까?<sup>93)</sup>

◎ 허위 : 이 사람과 같은 盡忠竭力 용맹한 기상이 2천만민에 있다고 하면 금일의 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유래 고관은 자기가 있음을 알고 나라가 있음을 모르는 자가 많으나 그는 그렇지 않는 고로 관계의 高等忠臣이라고 말할 것이다.<sup>94)</sup>

◎ 민공호 : 군인으로서 국록을 먹고 당당한 직에 있어 당당한 의병을 일으켜 최근까지 국가에 盡瘁한 소위 義士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다. 또 충신이라 말할 것이다.<sup>95)</sup>

◎ 유길준 : 근일 행동을 모르나 그는 아국의 혁명을 생각해 낸 사나이였으나 현상을 모르므로 평론을 가할 여지도 없다.<sup>96)</sup>

◎ 이강년 : 士人으로 국가위기에 제하여 진충갈력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다. 충신이라 말할 것이다.<sup>97)</sup>

◎ 최익현 : 고명한 인사이다. 격렬한 상서를 하기 수회, 그가 도끼를 들고 대궐에 엮드려 신의 머리를 베라고 강요한 따위는 참으로 국가를 우려한 인사이다. 또 그 조약에 반대하여 상서하여 드디어 뜻과 같이 행해지지 않아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일병이 이를 잡았으나 나라의 의사라 하여 일본부간도로 보내 구인하였다. 그런데 그는 伯夷·叔齊보다 그 이상의 인물이다. 周의 粟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최선생은 물도 마시지 않았다. 만고에 얻기 어려운 근세 제일의 인물이다.<sup>98)</sup>

◎ 박정빈 : 1908년 가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으므로 황해도 의병의 상황이 어떠한지 물었더니 軍器가 없어 곤란하고 싸울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본국에 돌아가 있다고 한다. 그는 진심충의의 지사이다. 문학 또한 깊다.<sup>99)</sup>

◎ 배텔 : 타국인으로서 본국을 위해 진력하고 민심의 발달 교육장려 등도 동인의 힘에 맡기암은 것이 많다. 한국을 위해서는 은인이다.<sup>100)</sup>

◎ 헐버트 : 이등이 흑독한 정략을 쓰고도 각국의 이목을 가리고 있음을 동인은

91) 안응칠의 공술(제3회), 1909.11.2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6쪽.

92)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7-418쪽.

93)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6쪽.

94) 위와 같음.

95) 위와 같음.

96) 위와 같음.

97)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6쪽.

98)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7쪽.

99) 위와 같음.

100) 위와 같음.

한국을 위해 분개하고 각국에 향해 한국의 진정을 발표해 준 자이다. 한국을 위해 진력한 공은 몰각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sup>101)</sup>

◎ 박영효 : 개혁을 도모하여 성사하지 못했다. 일본으로 망명하여 이번에 돌아와 궁내대신이 되고 칠조약 성립에 반대하여 謫配된 소위 忠臣이라 말할 것이다.<sup>102)</sup>

이상 20여 명 가운데는 개화론자, 계몽운동자, 의병, 외국인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그 평가도 다양하다. 최익현을 '근세 제일의 인물'로, 허위를 '관계의 고등충신'으로, 민공호를 '의사이자 충신'으로, 이강년을 '충신'으로 꼽으면서 대체로 의병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유인석의 경우 세계정세에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홍범도를 '뜻이 아름다운 애국의 의사 충신'이라 하면서도 시세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파하였다. 그런가 하면 계몽운동 계열의 이상설을 '이범윤같은 인물 만명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동양평화주의자'로 높이 평가하고, 안창호는 '사상이 가장 견실한' 인물로, 이갑은 '의사'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장지연 같은 文士에 대해서는 지사 내지 의사라는 평가를 유보하고, 양기탁을 '유지가'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배델, 헐버트 같은 외국인은 '한국의 은인'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민영환에 대해서는 명예를 위한 자결은 국가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서 혹독한 평을 가했다. 박영효는 정미칠조약에 반대한 점을 들어 '충신'으로 비교적 후한 평을 내렸다.

간단한 인물평이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안중근은 의병적 투쟁을 높이 평가하지만 구시대적 세계관에 머무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근대적 세계관에 입각한 계몽주의적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국 독립만이 아니라 동양평화가 전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안중근의 세계관과 정세 인식은 또다른 상황 변화에 따라 의협투쟁, 독립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하얼빈 의거의 성격과 의의

안중근 의거는 그와같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거행될 수 있었다. 안중근 의거는 이등박문 처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등박문 처단 후 국제재판에서 일제의 한국침략 실상을 세계에 알려 동양평화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의거 결행 후 동양평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원대한 목적은 일제의 불법재판에 의해 차단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안중근은 5개월여의 옥중투쟁에서 보여준 한국 독립의 철학, 그리고 '동양평화론'의 집필 등을 통해 의거의 본질이

101) 위와 같음.

102) 위와 같음.

무엇인가를 세상에 뚜렷이 남겼다. 옥중에서 발휘한 안중근의 신념은 20세기 초 제국주의가 판치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

안중근이 망명한 이래 2년 여 동안 만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러일의 각축, 거기에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열강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그야말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혼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쇠락할대로 쇠락해진 대한제국은 망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때 그는 의병을 일으켜 독립의 불씨를 피우려 했지만, 일본의 공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일제 침략이 만주지역으로 팽창하고 자력에 의한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주지역의 정세를 직시한 그는 “일본이 러시아·미국·청국과 반드시 전쟁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국제정세의 역학관계를 활용하여 한국 독립의 방도를 찾고자 했다.

그의 정세 인식은 만주가 일본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면 그만큼 한국 독립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한국 독립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만주지역의 안정, 나아가 동양평화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동양평화 차원에서 한국 독립의 이론을 정립하는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등박문이 하얼빈을 찾던 시점의 만주정세는, 미국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러일 양국의 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하던 때였다. 일본은 남만주 지배를 위해 간도문제에 불거진 청과의 대립을 간도협약으로 진정시킨 직후였고, 한국에 대한 완전 ‘병합’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특히 러일 양국은 무엇보다 최종의 단계로서 만주 분할점령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

섬나라 일본이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기 위해 만주침략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숙원의 과제이자 목표였다. 일본은 1904년 테프트·카스라 밀약에 의해 오키나와, 대만 이남의 필리핀 지역으로 진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 정도의 식민지 경영만으로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의 만주 침략은 한국 침략에 이은 필연의 과정이자 수순이었다.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등박문은 하얼빈을 찾았던 것이다.

안중근의 이등박문 처단은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 동양의 평화를 위해 거행한 의거였다. 그리고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안중근의 사상과 이념은 오래전부터 구상되던 것이다. 안중근은 해외 망명 이래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 투쟁이나 계몽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동양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양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당시 동양을 침략하는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독립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지, 서양 그 자체를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그의 천주교 세계관을 통해서도 확인될 뿐 아니라, 일본을 향하여 침략성을 버리고 동양평화에 동참하라는 주장에서 여실히 입

증되고 있다. 즉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서양을 떠나 국가와 민족간의 전쟁과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자는데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결코 인종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동양평화사상은 세계평화사상과 전혀 대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듯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국제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높은 수준에서의 원리로서 동양평화의 방도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성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침략의 원흉인 안중근 의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양평화의 출발이 되는 것이었다. 안중근이 법정에서 '일본국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등을 처단했다'<sup>103)</sup> 주장은, 바로 그같은 동양평화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이등박문은 동양평화의 기초를 이루는 삼국의 독립을 해쳐 동양평화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처단한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보전하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안중근의 그런 사상은 제국주의적 관점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인도주의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저해하는 원흉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상정하였다. 또 그는 이토를 포살한 근거로서 죄악 15개조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안중근의 여러 진술을 통해 제시되었고, 그 때마다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기는 하나 대동소이하다. 거사 직후인 1909년 10월 30일 신문조서에서 밝힌 내용과<sup>104)</sup> 1909년 11월 6일 재판 당국에 제출한 〈韓國人安應七所懷〉<sup>105)</sup>, 그리고 1910년 2월에 작성된 《安應七歷史》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안응칠역사》에서 제시된 15개조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민황후를 시해한 죄
2. 한국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 한국인인 일본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03) 국사편찬위원회 편, 「公判始末書 第五回 被告人安應七이라 하는 安重根 外 三名」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395~396쪽.

104)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3-4.

105) 국가보훈처 편, 《亞洲第一義俠 安重根》, pp. 94-96.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안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여기에서 제시된 15개조의 항목들은 앞서 ‘최초의 진술’이나 〈한국인 안용칠 소회〉에서 밝힌 것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항목의 순서가 바뀌거나 국권침탈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욱 강조되는 정도이고<sup>106)</sup> 논리적으로 보다 정돈된 차이를 보일 뿐이다.

15개 조항 중 1번과 15번을 제외한 13개 조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있는 동안에 저지른 죄과를 정확하게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자행된 침략상을 적확하게 제시하는 안목과 함께, 최초의 진술에서 자서전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지적한 내용이 일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포 직후인 10월 30일의 진술과 자서전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진술에서 이토의 죄목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음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가 오랜 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결행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토 히로부미(1841-1909)는 1881년 정변에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을 추방하고 정부의 실권자가 된 이래, 내무경을 거쳐 궁내대신 등을 역임하고, 내각 총리 대신에 올라 침략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1894년의 청일전쟁과 1895년의 민비시해와 같은 침략행위를 자행한 바 있었다.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는 직접 을사5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準植民地로 만드는데 앞장 섰고, 1906년 3월 초대통감으로 한국에 부임하여 1909년 6월 15일 이임할 때까지 만 3년 3개월을 한국에 있으면서 식민지 통치를 주도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청일전쟁 당시 명치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함께 일본의 대한정책목표였던 한국보호국화작업을 수행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sup>107)</sup> 이토 히로부미의 명령을 받은 정상은 주한공사로 파견되어 한국 민중의 반일운동을 억압하고 반일정치인들을 숙청하는 등 작업을 진행시키는 한편 괴뢰정부의 수립, 일본인고문관 배치, 신조약 체결, 500만원의 정치 차관 제공 등을 추진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대한정책 구상은 모든 것이 이토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었다.<sup>108)</sup>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재임하면서 식민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07년 5월 박제순 내각 대신에 이완용을 수반으로 한 친일내각을 조직하여, 광무황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한편,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 문제를 계기로 7월에 황

106) 조광, 〈안중근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전쟁〉, 《교회사 연구》 9, 1994, pp. 89-91.

107) 유영익, 〈청일전쟁중 일본의 대한침략정책〉,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 134.

108) 유재곤, 〈일제통감 伊藤博文의 대한침략정책(1906-1909)〉, 《청계사학》 10, 1993, p. 223.

제의 강제 퇴위를 강행했으며, 8월에는 군대를 강제 해산하는 노골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정미칠조약에 의해 고문정치를 폐지하고 일본인이 외교, 내정, 군사, 경찰권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차관정치를 시작하였던 바 이들 차관은 모두 이토가 직접 선발한 인물들로 이루어졌다.<sup>109)</sup> 그렇게 하여 이토는 '합병'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고, 일본 제국의회에서 '합병'의 문제가 종결되던 무렵인 1909년 6월 통감을 사임하고는 만주 침략을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만주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러시아와 담판하고자 직접 만주 시찰에 나섰던 이토는 하얼빈에서 대한민국 의병총장 안중근에 의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 7. 맺음말

30여의 짧은 생애였지만, 안중근은 제국주의의 발호에 맞서 민족과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며 영원 불멸의 족적을 남겼다. 그의 초기 사상과 이념은 문명개화론적 지향을 보이며 민족현실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러일전쟁 이후 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식한 그는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였다. 처음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07년 망국의 사태를 목도하면서 그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한 의병전쟁으로 전환해 갔다. 이무렵 그는 5년쯤 뒤에 일본이 러시아나 청, 미국 등 3국 중 어느 나라와 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그때를 독립의 호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의병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하였다. 그렇다고 의병전쟁을 통하여 당장에 독립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그 길만이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고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길이었으므로 택한 것이었다.

계몽운동에서 의병전쟁으로 전환해 간 안중근의 구국운동은 독립운동 상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방략 전환은 독립운동의 발전적 측면에서 계몽운동과 의병전쟁의 두 갈래로 전개되던 한말의 구국운동이 독립군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문명개화론적 기반 위에서 의병전쟁 방략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독특한 것이었다. 그의 의병투쟁은 전통 보수적 의병과는 달리 세계대세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취해진 독립전쟁적 방략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의병전쟁이 동양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략으로 취해질 수 있었다.

안중근 구국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나 정의와 인도에 바탕을 두었던 점일 것이다. 그는 제국주의의 침략은 배척해도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향한 높은 정신 세계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같은 기초 위에서 동양평화를 구상하였던 것이다. 당시 서양세력의 침략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양 삼국이 각기 독립의 상태를 유지한

109) 今村武志, 〈半世紀前 朝鮮〉, 《朝鮮研究會論文集》 3, 1975, pp. 169-172.

가운데 결합하는 것으로 진정한 동양평화를 실현하려는 구상이었다.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성을 막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포살 의거는 한국의 독립뿐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한 염원에서 결행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세계 각국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동양평화의 주장자로 치켜세웠으나, 이때 안중근은 외롭게 법정에서 이토의 죄과를 지적하면서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한 세기가 흐르고 제국주의의 허물을 씻어버리려는 오늘날에서 볼 때, 이토는 과연 동양평화, 세계평화의 수호자였던가, 아니면 파괴자였던가?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이러한 물음에 명확하고도 진실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누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신주백(연세대 HK연구교수)

## 1.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의 목표(사례)<sup>110)</sup>

1983년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이 결집한 ‘教科書正常化國民會議’에 소속된 ‘日本を守る國民會議’(이하 국민회의)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한 걱정한” 일본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85년 5월 <<新編日本史>>(原書房)을 작성하여 검정을 신청하였다. 문부성은 이듬 해 5월 800여 곳에 검정의견을 붙여 합격시켰다.

1981년 10월에 결성된 국민회의는 소화천황 재위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군사력으로 지키는 방위 문제와,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지켜야 하는 교육에 관계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커다란 문제로서 헌법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지키는 근원은 결국 국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바꿔 말하면 천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들이 헌법 개정을 제창하는데 있어 우선 국가의식, 나아가서는 천황에 연결되는 국체라는 것을 우선 분명하게 확립하는 데서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법·방위·교육의 문제는, 우선 올바른 국가의식을 말하자면 올바른 애국심의 확립이라는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日本の息吹>> 2, 1984. 7.).

국민회의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에게 역사교과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는 기재였던 것이다.

## 2.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의 최근 역사

### 1) 1990년대 일본의 동향

패전 이후 일본 우익은 줄곧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역설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역사수정주의사관이나 자유주의사관의 핵심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1990년대 이후의 움직임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후 교육을 상징

110) 강연원고는 발표자가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역사교육연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이다. 관련 내용은 강연 때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겠다.

하던 사회과가 폐지되면서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일본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대변하는 움직임은 일본 자민당이 1993년 ‘역사 검토위원회’를 만든 데서 드러난다. 이들은 일본을 침략국가로 묘사하는 자학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일본, 곧 성공한 일본, 그리고 국가에 대해 긍지를 갖는 건전한 일본인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996년에도 자민당의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회장 오쿠노 세이스케 전법무상)에서는 현행 「학교 교육용 도서 검정기준」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을 배려하도록 명기한 ‘근린제국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한 언론이 산케이 신문사이다. 산케이 신문사는 신문을 통해 아사히 신문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주장을 공격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教科書が教えない歴史』, 『國民の歴史』를 출판하며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 또 산하에 있는 후쇼사(扶桑社)란 출판사에서는 우익적인 주장을 담은 책을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 파동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출판하였다.

우익 정치인과 언론의 역사인식에 호응하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즈음이었다. 즉 1995년 1월 동경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후지오카 노부카즈가 창립한 自由主義史觀研究會와 1997년 1월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그 대표적인 단체다(새역모). 이로써 ‘제3차 교과서 공격’의 편제, 즉 조종자이자 뒷 배경으로서 우익 정치인, 선전대인 산케이신문 등 우익 언론, 행동대인 새역모로 삼각 구도가 짜여졌다.

자유주의사관이 전후 역사교육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자학사관’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주의사관이 기존 교과서를 비판하는 핵심은 전후 일본인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와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국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일본 역사에 대한 부정적 역사관이 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전후 역사교육의 기점을 미국의 점령통치에서 찾고 있는 이상 이런 인식은 미일관계와 반미의식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역사 재평가 속에 등장하는 반미주의는 역사교육 강화논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미일관계와 안보조약을 흔들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공주의와 친미보수주의는 이들의 또 다른 명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반미와 현실적 미일안보체제를 공존시키고자 선택한 것은 개헌을 통한 정치·군사 대국화의 길이다.

자유주의사관에서 주장하는 역사교육은 한마디로 전전의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애국심을 지닌 일본인’을 양성하도록 역사교육도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 역사인식을 단절시킨 현행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헌법 이념을 기본으로 한 교육이념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미 점령군이 만들어 일본에게 강요한 것으로 일본의 의지와 정신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戰前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도 단절을 강요 당해 건전한 국가의식과 국민의식을 함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헌법에 기초한 역사교육은 일본인으로서의 ‘혼’을 잃게 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제 경제대국으로는 국제질서 속에 제대로 편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접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점점 증가하는 지역분쟁과 종교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대우받으려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논리는 더 이상 경제력이 정치력이나 군사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방위비 예산편성과 핵무장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sup>111)</sup> 고이즈미 총리가 높은 대중적 지지도에 기반을 두고 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분위기에 뒷받침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이래 나카소네 총리를 비롯한 몇몇 총리들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구상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던 것을 이때 개정안을 제출하고 후임 정권에서 가결되었다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바 컸다. 이같은 헌법 개정 요구는 정계와 재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결국 자유주의사관이 전전의 황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국익 중심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관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2001년의 역사과동과 역사교과서 왜곡세력

2001년 2월경부터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후소사의 검정신청본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2001년 1월 한일의원연맹회장의 우려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고, 2월 18일에는 정부차원에서 두 나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되었다. 시민단체에서도 3월 14일 ‘일본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일본정부는 4월 3일 새역모의 교과서가 나머지 7종의 교과서와 검정에 통과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다음 날 한국과 중국정부는 과거 잘못을 합리화한 것은 유감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렬한 분노와 불만을 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7일에는 타이완과 베트남에서도 일본의 교과서문제를 비판하였다. 한국정부는 “한·일 간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응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4월 12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4월 12일)하였다. 대책반은 5월 8일에 학계의 협력을 얻어 일본정부의 왜곡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한 「수정요구안」을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4월 11일에 한일경제협회 소속의 일본인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98년 일본 방문시 일본 정부는 파트너십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사

111)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 테러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과 동시에 미국의 對테러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것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최했고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문제는 이런 공동선언 정신에 비춰 매우 미흡한 데 대해 한국 국민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의 태도는 강경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은 한국 정부의 ‘지나친 신중함’ 내지는 ‘어정쩡한 관망’, 그리고 ‘뒤늦은 강경대응’의 양상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82년도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후 일본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면서 관망상태를 보이던 여론은, 7월 9일 일본정부의 학설의 다양성에 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정을 거부한 답변에 폭발하였다. 여기에다 靖国神社에 합사되어 있는 대한민국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의 위패문제와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결부되면서 한국의 대일 여론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1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문화개방 일정을 중단하였다.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식혀줄 시원한 대책이 없었던 한국정부는 8월 15일 후소사 교과서가 0.039%의 채택률을 보임에 따라 여론은 급속도로 식어갔다.

한편, 2001년도 파동은 1982년도 파동 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바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다. 1982년에는 향의 시위가 관변단체 중심이었지만, 2001년도 대중의 반일시위는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주도하였다. 더구나 과거청산활동의 새로운 경향의 연속선상이지만 한일 연대 활동이 병행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보기가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 6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일본 동경에서 벌인 아시아연대활동일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한일간 역사갈등 해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세계평화를 흐트러치는 행위임을 알리는 실천적 모습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에서는 10월 15일에 양국의 정산 사이에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듬해 3월 5일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보험’ 성격이 강하며 외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역사대화기구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3) 2001년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전후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문제는 年例化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한 것만 들어도 2002년 <<最新日本史>> 교과서의 검정통과,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후소사 교과서의 역사왜곡문제, 2006년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문제, 2007년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영유권 표기문제, 2008년 일본의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자기 영유권으로

표기한 문제, 2009년 지유사 발행 역사교과서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2001년 이후 여러 문제들이 교과서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점차 독립된 갈등 요인으로 심화되면서 한일간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립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영토문제, 바다의 명칭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지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종속변수로부터 독립변수화하였다.

2001년 이후 역사문제가 독립변수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려는 우익과 보수 세력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2001년의 9·11테러와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고백은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보수 우경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두 사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비롯한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에 명석을 깔아준 돌발정세였다. 새역모가 2005년판 역사교과서에서 親美反北이란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들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검정을 통과한 후조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갈등은 정부차원에서 있었던 것인데, 2001년과 비교할 때 정부간의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5년 역사교과서문제는 1982년의 역사교과서문제 때처럼 한국 정부의 정치적 필요와 연관된 경우도 없었다.

2005년 역사교과서문제는 2001년보다 채택과 불채택 사이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방전의 주된 긴장관계는 민간차원에서 한중일이 함께 만든 공동역사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 未来を開く歴史, 東亞三國의近現代史>>(한겨레신문사, 高文研, 社會科學文獻出版社)를 내세우며 벌어지는 상황에 한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하며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불채택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형성되었다.<sup>112)</sup>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전과 달리 주로 민간레벨에서의 대결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제 교과서협력운동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결 전선이 넓어져 버거운 측면도 있었지만, 2005년에도 10%를 내세웠던 새역모의 의도를 좌절 시키고 0.4%라는 채택률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민간차원의 유대와 협력활동의 결과 앞으로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만큼 갈등의 국면이 넓다는 의미에서 대결구도가 확산되어 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 3.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의 현재

#### 1)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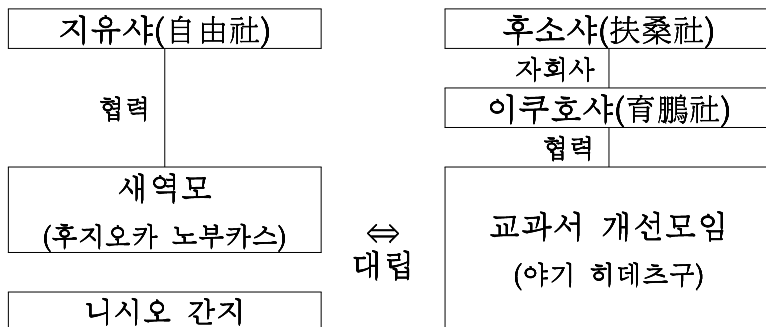
112) 예를 들어 6월 5일에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민단체 독자의 수정요구안을 일본 대사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2001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본의 신문사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読売新聞>> 전국판, <<朝日新聞>> 도쿄판을 비롯하여 10개 신문에 7월 22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14회 광고를 게재하였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5 활동보고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일본은 2007년 6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애국심 교육을 공공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지도요령이 2008년 4월에 개정되었고, 7월 15일에 독도에 관한 서술을 명기한 『학습지도요령해설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신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4년 주기에 해당하는 2008년에 교과서의 검정신청을 받아야 했는데, 교육기본법 제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이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발행 출판사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를 2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2008년에 검정신청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였다. 8종의 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모두 이 요구에 응하였다.

하지만 새역모는 그럴 수 없었다. 주지하듯이, 새역모는 2001년에 이어 2005년에도 채택률 10%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크게 분열하였다. 2006년 이후 분열은 필자 사이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면서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간의 대립 구도와 더불어 필자간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에 발행된 지유샤판 교과서는 새역모를 사수한 후지오카 노부카즈 등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선명히 내세우면서 이탈한 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출판을 강행한 결과물이다. 이들 사이의 대립 구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새역모와 교육개선모임의 대립구도



출전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항의 기자회견”- 새역모의 복제품, 지유샤판 ‘위험한 교과서’(2009.4.9)』

위의 <표 1>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일본 우익 내부에서 자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던 와중에 나온 교재이다. 그것은 두 차례 연거푸 채택률 10% 달성에 실패한 후지오카 등 새역모 사수그룹의 사활을 건 몸부림이기도 하다. 역사교육이 우익간의 패권싸움에 희생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새역모 그룹이 교과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연구한 것

같지 않다. 2006년도 후소사판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sup>113)</sup> 뒤의 <부록>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 문장까지 같거나 아주 비슷하다. 아무리 후소사판 교과서 집필진 9명 가운데 5명이 이번 집필에 참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학자의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교과서편찬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교과서 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이를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의 문교족과 자민당의 정치인은 새역모 등의 입과 발을 빌려 일본 국민에게 자신의 역사관을 공공연하게 설파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나팔수를 생존시킬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문부과학성과 자민당은 새역모를 배제하고 교육재생기구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검정통과 행위는 일본 역사왜곡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일본 우익의 역사인식을 대중적으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해 준 행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전쟁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우익의 역사교과서가 주장하는 역사 사실이 학교교육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거나 그대로 고정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2012년부터 다시 사용될 교과서에서는 ‘자긍심’과 ‘애국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야만 하므로 더 세련되면서도 우익적인 역사 서술이 강화될 것이다. 2009년도 검정통과는 이를 미리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9년도 검정통과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묻지 않고 미래를 말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3·1절 기념사에서 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결코 없다”는 접근방향에서는 한일간 현안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지속시킬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실용’만 강조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를 봉합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해결지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가까운 장래에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갈등을 진척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던 1982년 이후 한일간에 서로 논점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봉합되어 오다, 2001년부터 거의 매년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2009년도 검정통과는 일본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인 것이다.

## 2) 자유사판 발행의 의미

자유사판 교과서는 일본 현대사에서 한국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사 개척을

---

113) 이것조차 집필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행태였다. 처음 자유사에서 검정을 신청했을 때 문부과학성에서 검정을 실시한 결과 516곳에 문제가 있어 불합격시켰다고 한다. 새역모는 지적사항을 모두 수정한 이후 다시 신청하였는데, 교과서의 136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번 시판본은 이를 수정한 결과물이다.

간과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란 연합군의 점령과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성장한 역사가로 설명되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교과서에서 재현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국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를 갖고 역사교육을 진행한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싸움꾼 일본인을 양성하는 역사교육만이 되풀이될 것이다.

지유사관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관한 한 갈등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역사관을 세련되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사실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부드럽게 표현하며 외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역사관 곧, 스스로 규정한 한중예속사관, 구미추수사관, 공산주의찬양사관을 극복하고 천황중심사관, 전쟁미화사관을 세련된 편집방식과 교묘한 논리 전개 속에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유사관 역사교과서는 제9조를 폐기시키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자랑스러운 국민이 모여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만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교재라고 볼 수 있다. 2002년판, 2006년판에 비해 2009년도 ‘시판본’이 이를 가장 깔끔하게 ‘역사’ 교과서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지유사관 역사교과서는 2006년도 ‘후소사관의 완전 복제품’으로 같은 종류의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저작권 위반 여부를 놓고 일본의 우익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우리의 관심 밖이다.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 이 책의 검정통과는 문부과학성이 역사왜곡의 주도자이고, 우익 역사관의 방과제라는 사실이 이번 검정통과를 통해 대중적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 4. 왜곡 세력에 대응한 화해와 협력 노력의 현재 - 역사교과서 대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해소하려는 세력들은 2002년부터 공동역사교재라는 대안물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 『조선통신사』(한길사), 『미래를 여는 역사』,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한울아카데미), 그리고 2006년에 『마주보는 한일사』(사계절)와 『한일교류의 역사』(혜안)이 출판되었다. 특히 『미래를 여는 역사』를 발간한 움직임은 한일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의 역사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한 결과물로서 1945년 이후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민간차원의 노력은 역사교과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교과서 대화의 경험을 볼 때, 민간차원의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역사교재를 개발하는 활동은 교과서를 놓고 대화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시작하는 정치적 준비이고 사회심리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114)</sup>

역사교과서 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2002년 5월 정부차원에서도 시작되었다.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3월 동경에서 열린 제6회 전체회의 때까지 진행되었고, 다섯 권의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제1기 활동을 끝마쳤다. 같은 기간 동안 공동연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관계자, 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 기타 민간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의 역사공동연구지원위원회도 활동하였다.

---

114) 자세한 내용은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제4장’ 참조.